

코리아연구원 - 코리아컨센서스 공동포럼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및 정책방향 모색

일시: 2007년 4월 27일 14:00-18:00 /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주최: 코리아연구원, 코리아컨센서스

■ 차례

1

행사프로그램 안내

■ 1부 ■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및 정책방향 모색

2

곽준혁(경북대 교수) ■ 비지배적 상호성: 고전적 공화주의의 현대적 재조명 1p

안병진(경희사이버대 교수) ■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와 새로운 보수주의의 도전 18p

■ 2부 ■ 2007대선의 주요 쟁점 분석 및 정책방향

3

박건영(가톨릭대 교수)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28p

이해영(한신대 교수) ■ 한미FTA 주요협상결과 총평 35p

4

별첨자료

<한미FTA 협상결과표> 53p

<한미FTA 쟁점정리표>

5

발표·토론자 소개 65p

6

공동 주최자 소개 66p

■ 행사프로그램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및 정책방향 모색

일시: 2007년 4월 27일(금요일) 14:00~18:00 /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최: 코리아연구원 / 코리아컨센서스

(14:00~16:10)

1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사회: 백준기(코리아컨센서스 운영위원장/ 한신대 국제평화인권대학원장)
- 발표: 곽준혁(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안병진(경희사이버대학교 영미학과 교수)
- 토론: 이병천(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권혁용(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휴식

(16:10~16:20)

2부

2007대선의 주요 쟁점 분석 및 정책방향

- 사회: 박순성(코리아연구원 연구기획위원장/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발표: 박건영(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이해영(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 토론: 서동만(상지대학교 교양과 교수) / 유태환(목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6:20~18:00)

■ 제1부 ■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비지배적 상호성: 고전적 공화주의의 현대적 재조명*

곽준혁(경북대 교수)

1.

인식의 전환은 경험적 연구만큼이나 이론적 탐구로부터 시작된다. 이론(theoria)이라는 단어가 ‘여행하다,’ ‘보다,’ 그리고 ‘해석하다’의 뜻을 가진 관찰자(theoros)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듯이, 현상에 대한 치밀한 분석만큼이나 주어진 현상을 새롭게 조명할 사고의 방식을 찾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제도를 수정하려 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론적 탐구는 필수적이다. 델포이 신전에 신탁을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문제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직면한 문제에 대한 현상적 집착을 넘어 근원부터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익숙한 사고방식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일탈, 진지한 자기반성, 그리고 사려 깊은 재해석의 반복적 수행이 없이는 당면한 문제에 얽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문제를 통해 반영된 절박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압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특히 제도가 가져올 결과만을 주목하는 오랜 습관을 벗어나고 어떤 정치적 원칙이 어떤 제도를 통해 표현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물론 제도가 기초하고 있는 정치적 원칙과 제도를 통해 기대되는 결과가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 결과를 놓고도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둘의 구분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결과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예측된 결과에 기초해서 벌어지는 정치적 흥정에 따라 제도의 존폐가 좌우될 수 있지만, 정치적 원칙에 초점을 맞춘 경우에는 제도가 정치적 원칙을 성공적으로 구체화하는 한 갈등하는 쌍방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게 된다. 마치 수학적 논증과 감각적 웅변으로부터 정치적 사려(phronesis)가 독립하듯, 특수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통해 폐기될 수 있는 제도도 정치적 원칙의 분석을 통해 존재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축적된 경험과 정치적 고민의 결합으로 제도를 이해하는 제도사상사에서 볼 때, 그리고 정치적 원칙을 삶을 해석하고 영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정

*아직 working paper 수준입니다. 필자의 동의 없이 인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치사상사에 비추어 볼 때, 학계와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에 비해 ‘공화주의’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태다. 실제로 공화주의가 하나의 일관된 인식론적·철학적·정치적 판단기준이자 독자적인 역사를 가진 정치사상적 전통으로 파악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의 대안 또는 자유주의의 보완으로 논의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주의적 선택과 조작적 정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의 대상으로 치부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공화주의의 오랜 전통과, 사상사에서 차지하는 독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조차 비슷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화주의는 비록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정의되는 공화주의의 분류와 특성을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독특한 공화주의를 정의하고 수립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을 보게 된다. 아마도 서구의 사상과 우리의 경험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화주의의 인식론적 기초마저 부정하면서까지 다른 정치 원칙과의 창조적 결합 양식을 찾으려는 것은 무리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자는 고전적 공화주의를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저술에서 나타나는 ‘비지배적 상호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화주의 담론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고전적 공화주의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과제가 수행된다. 첫째, 자유의 고전적 의미를 가지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시민적 공화주의), 그리고 시민적 공화주의와 고전적 공화주의의 차이를 인식론에서부터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이해까지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기본적인 틀에서 볼 때, 최근 등장하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결합이 갖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체적 공화주의’라고 규정된 결합 양식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고전적 공화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민주주의의 논의에서 어떤 전환이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화주의’가 진보와 보수, 나아가 그 어떤 정치적 입장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동일한 이유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찰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1) 공화주의는 이미 한 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단어가 되어버렸다. 한편으로는 어떤 정치체제,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예전에도 공화주의는 정의하기 힘들었다. 때로는 단순히 왕정이 아닌 정치체제, 때로는 사회계층의 각 부문이 몹을 담당하는 혼합정체, 그리고 때로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립되는 귀족적인 성격의 대의제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초에 공화정(res publica)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을 때, 비록 전제 또는 자의적 권력에 반대되는 정치체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 공화주의는 결코 왕정이 아닌

정치체제를 지칭하는 말은 아니었다. 또한 일방의 독점이 아닌 공유의 대상으로서 공화정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다수의 전체에 대립되는 신중함이 강조되었지만 혼합정체만을 의미하거나 대의제를 지칭하는 말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리고 고전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유주의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공화주의 사상은 존재했으며, 사실 ‘자연권’ (natural rights)을 제외하고는 자유주의는 공화주의의 일부분을 편협하게 강화하고 이론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자세는 공화주의를 특정 인식론에 기초한 사회적 신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공화주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어떤 인식론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론에 기초해서 어떤 정치적 원칙이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정치적 원칙을 공화주의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정치제도들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이미 한국 학계에는 공화주의에 대한 영미학계의 다양한 이론들이 소개되었다. ‘시민적 공화주의’ (civic republicanism)로 다시 명명된 공동체주의, 마키아벨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로마 공화국에서 그 근원을 찾는 ‘신로마 공화주의’ (Neo-Roman republicanism), 미국적 토양에서 배양된 ‘자유주의적 공화주의’ (liberal republicanism), 그리고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라 전체적 개체(holistic individualism)라는 개념을 통해 자율성과 시민적 덕성을 결합시킬 수 있다고 믿는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republican liberalism)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논의가 한국 학계에 소개되고 검토되었다. 이 가운데 ‘비지배’ (nondomination) - 타인의 자의적 의지로부터의 자유 - 라는 개념을 앞세운 신로마 공화주의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단연 돋보인다. 신로마 공화주의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비단 우리만의 모습은 아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영미권의 페티(Philip Pettit)과 스킨너(Quentin Skinner), 이탈리아의 비롤리(Maurizio Viroli), 그리고 프랑스의 스피츠(Jean-Fabian Spitz)로 대표되는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의 이론들은 지속적인 토론과 논쟁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듯 신로마 공화주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무엇보다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이들이 제시하는 ‘비지배 자유’가 개인의 자율성과 공공선의 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일관된 정치적·사회적·도덕적 판단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1990년 말에 등장한 수많은 정치철학분야 책들이 대변하고 있듯이,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오랜 논쟁은 자율성과 공공선이 양보 불가능한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과제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을 뿐 많은 학자들을 지치게 했다. 이때 등장한 신로마 공화주의의 ‘비지배 자유’는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와 공동체주의의 ‘적극적 자유’라는 단순 도식을 극복할 수 있는 제 3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런 맥락에서 자율성과 공공선을 결합하는 비지배 자유라는 조건의 역사적 근원과 적실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증폭시켰다. 그 차이를 간단하게 말하면 <표 1>과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유로운 행위(action) 또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비지배적 조건(condition)을 강조한다는 점, 그리고 ‘진정한 시민적 본성(true

civic nature)’ 이라던가 아니면 그 어떤 ‘이상적인 시민적 덕성’의 선형적 또는 경험적 전형(eidos)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신로마 공화주의의 ‘비지배 자유’가 한편으로는 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에 대해 제기한 불만들을 해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주의가 공동체주의에 제기했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일반적 확신을 제공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표 1> 비지배 자유

	소극적 자유	비지배 자유	적극적 자유
자유 정의	The absence of intervention	The absence of domination	The exercise of civic capacity
자유 핵심	선택 행위 (action: choice)	자유로운 조건 (condition)	자율(self-governmen t: one's own code)

둘째, 신로마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화해 불가능한 인식론적 길항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인간관에서부터 세계관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이한 접근방법을 보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기계적인 결합은 사실상 수사적인 표현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차이는 단순히 전략적 선택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인식, 시간과 공간에 대한 화해 불가능한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물론 편의를 위해 극단적인 대립양상을 전제했지만 이 둘 사이에는 많은 변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결합 양식이라도 인식론적으로 길항적인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자율성과 공동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신로마 공화주의는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의 주관주의와 상대주의적 경향성,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주의의 객관주의와 전체주의적 경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실현성 있는 결합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특히 <표 3>에서 보듯 시민적 공화주의와의 차이는 자유주의가 지금까지 제기한 공동체주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인식론적 전환을 달성했다는 확신을 제공했다. 특히 개인성에서 출발해서 ‘비지배적 조건’을 매개로 개인적 욕망과 공공선을 연결시키는 방법, 즉 방법론적으로 개인성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고, 목적으로는 공공성에 바탕을 둔 공화주의의 전통을 따르는 방식으로 가장 실현 가능한 결합 형태를 창출했다.

<표 2>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시민적 공화주의)
인간관(인식론적 차이)	(a) 인간은 분리되어있고, 고립되어 있으며, 독립적이다. (b) 이들이 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추구하는 것은 군집하는 동물과 유사 또는 동일하다. 즉 안전(security)이다.	(a)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며, 상호의존적이고, 따라서 관계성 속에 존재한다. (b)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생존이 아니라 잘 사는 것(eu zen), 즉 행복(eudaimonia)이다.
인간과 사회의 목적	(a) 보편주의: 인간의 보편성을 상정한다. 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인간이 추구하는 바는 똑 같다.	(a) 특수주의: 공동체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없듯,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각기 다르며, 문화적 차이를 갖는다.

	(b) 주관주의: 최종 판단은 개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모든 선택은 개인의 의사가 우선이다.	(b) 객관주의: 인간은 직관적으로, 공동체에 소속되면,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을 인지하며, 이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갖는다.
문제점	(a) 개인주의로 인한 개인화와 원자화, (b) 개인에게 최종판단을 맡기는 주관주의로부터 도덕적 상대주의적 경향성, (c) 국가의 중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 개인의 사회적 권리의 보장과 증진에 인식.	(a) 인간에 대한 몰이해 인간의 공공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개인의 자율성 침해, (b) 전체적 선호의 사회 공학적 강요, (b) 객관주의로 인한 다양성의 침해와 극단적 형태의 전체주의화 경향성.

<표 3> 시민적 공화주의와 신로마적 공화주의

	공동체주의(시민적 공화주의)	신로마적 공화주의
인간관	(a) 상호의존적, (b) 군집의 필연성과 자연성 (인간은 사회를 통해 개개인이 부여받은 본성을 실현한다. 이 본성은 자연적으로 사회적-공동체적이다.)	(a) 상호의존적, (b) 군집의 필연성은 거부 (인간의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공동체가 필요하다. 본성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일 필요는 없다.)
정치참여	(a) 참여는 자연성의 회복이자 필연적인 것, (b) 정치참여 그 자체가 목적.	(a) 참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 (b)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는 것이 목적.
시민적 덕성	(a)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실체, (b) 명백하고, 자명하며, 전정치적(pre-political) 의무. (cf. 심의적인 태도도 견지)	(a) 비지배적 조건의 경험에 기초한 자유에 대한 애착(shared good), (b) 정치적 산물이며, 심의를 통한 정치적 판단이 요구됨.

최근 신로마 공화주의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화주의 논의를 이끌고 있다. 공동체주의의 기원으로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재검토, 로마 공화국의 키케로로부터 마키아벨리에 이르는 ‘자유’에 대한 사상 연구, 자유주의 등장 이전의 공화주의 전통에 대한 역사적 분석, 그리고 민주주의 일반이론에 이르기까지 신로마 공화주의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른바 미국 헌법에 대한 해석 문제로 시작된 1970년대의 공화주의적 수정, 1980년대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논쟁에 이은 공화주의의 제 3막이 오른 것이다.

3) 상대적으로 남용되지만 좀처럼 하나의 개념으로 정착되거나 검토되지 못한 것이 바로 고전적 공화주의(classical republicanism)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해석을 통해 시민적 공화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파헤친 포콕(John Pocock)도 스스로가 발견한 바를 고전적 공화주의라고 부르고, 신로마 공화주의자들도 로마 공화국에서 비롯된 전통을 따른다는 의미로 ‘고전적’이라는 수식을 즐겨 사용한다. 고전 연구자들 사이의 ‘고전적’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더 복잡하다. 아렌트(Hannah Arendt)가 대표적이다. 미국에서 아렌트는 한편으로는 보수의 원조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이론의 정신적 지주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자와 후자 모두 고대의 활동적인 삶(vita activa)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적(the political)인 것’의 복원으로 현대 사회가 실패한 시민적 삶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와 로마의 시민적 용기(andreia)와 공동체에 대한 애착(philopoli)의 강조가 영광

(gloria)에 대한 공화주의적 집착(duseros)마저 정당화시키는 보수의 화신으로 비쳐진다면, 공론(endoxa)의 정치적 복원과 시민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요구는 월린(Sheldon Wolin)과 바버(Benjamin Baber)식 민주주의 이론과 포콕식 역사 연구에 영감을 제공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미국 신보수주의자의 정신적 지주처럼 알려진 스트라우스도 예외는 아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체제는 곧 시민들의 삶의 총체이자 성격이라는 의미에서 폴리스(polis)의 안위를 무엇보다 중요시여기는 고전적 공화주의의 그리스적 표현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적 획일화를 거부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 불가능한 개인성을 강조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해박한 고전 선생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고전적’이라는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콩스탕(Benjamin Contant)의 고대와 근대의 구분을 통해 ‘고전적’이라는 독특성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고전에서 현대적 적용의 판단근거를 찾는다는 의미 이상은 없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는 ‘고전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을 구분하는 잣대로 이용된다. **(가) 첫째, ‘고전적’ 공화주의에서 ‘자연권’은 발견할 수 없다 (Brunt 1988, 281-350).** 물론 신 또는 자연과 같이 인간 외적 힘으로부터 비롯된 권위를 바탕으로 부여된 자연법 또는 신법이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은 존재했다. 그러나 이 때 권리는 ‘인간’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아닌 시민’이 향유하는 권리였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공론의 대상이자 심의의 결과였다. 다시 말하자면 ‘고전적’ 공화주의에서 인간의 권리는 쟁취되는 것이지만 천부적으로 부여받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자연법과 자연권을 도출하는 추론은 고전적 공화주의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표 4>에서 보듯이, 이러한 차이에서 자유주의적 헌정주의와 공화주의적 헌정주의의 정치권력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그 결과 민주주의와의 결합 형태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나) 둘째, 자유에 대한 고전적 이해는 근대적 이해보다 복잡하다.** 그리스와 로마에서 자유(eleutheros, libertas)라는 말이 자유인(eleutheros, liber)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에서도 드러나듯, 고전적 자유는 노예(doulos, servus)가 아닌 사람, 즉 시민이 향유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자유의 의미는 패터슨(Olando Patterson)의 사회학적 분류와 고전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된다(cf. Patterson 1991). (a) 첫 번째가 개인적 자유(personal freedom)다. 근대적 의미의 ‘소극적’ 자유가 여기에 속한다. 행위 중심의 자유, 간섭과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선택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b) 두 번째는 주권적 자유(sovereignal freedom)다. 다른 족속 또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로 공동체와 공동체의 관계에서 언급된다. 당시 노예상태(aneleutheros)란 전쟁 등을 통해 주권적 자유를 상실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기에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강조되기도 했다. (c) 세 번째는 시민적 자유(Civic freedom)다. 이 자유는 정치적 삶(vivere politico)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적 권리의 다른 표현이었다. 여기에서 그리스의 평등 개념들(isogonia, isokratia, isonomia, isegoria)이 자유로 구체화되고, 로마의 탁월함에 기

초한 귀족적 대표성(gradus dignitatis)이 인민(populus)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중 어느 하나만이 강조되거나 어느 하나가 빠질 경우 그건 노예상태 또는 비시민적 상태라고 보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a)만 강조되는 경우 방종(exousia, licentia)이라 불렀고, (b)의 표현 형태에 따라 참주의 단초를 발견했으며, (c)가 없이 (a)와 (b)만을 가진 상태가 로마공화국과 로마제국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표 4>에서 보듯 고전적 공화주의는 시민적 공화주의나 프랑스혁명 이후의 공화주의와 다소 다른 민주주의와의 결합양식을 보여준다. 즉 이데올로기적 정념(pathos)이 아니라 시민적 기풍(ethos)로 표현되는 것이다.

<표 4>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민주주의와의 결합형태

	자유주의	공화주의
정치권력에 대한 입장(두 입장 모두 절대 권력에 대한 부정성을 담고 있다.)	(a) 정치권력은 제한(limited)되어야 한다. (b) 그 제한 항목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권리는 자연적이며 천부적이기 때문이다.	(a) 정치권력은 통제(regulated)되어야 한다. (b) 권력의 제한은 자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의 권리는 획득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구성되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정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의 관계(변화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힘에 대한 제도적 전제)	(a) 민주주의와 길항적 공존(개인적 자유를 위해 주권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유(freedom)와 안전(security)의 시계추(swinging pendulum) 현상이 발생한다. 국가는 필요악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우선) (b) 소수자의 권리의 침해를 막기 위해 중립적 판단을 요구한다. (국가의 중립성 요구 nemo iudex in causa sua 제 3자적 판단 요구)	(가) 시민적 공화주의 (a) 민의의 반영을 통해 헌법의 자유로운 개정을 강조함으로써, 민주적 심의를 우선시하는 입장; (b) 반면 국가의 중립성보다 전체적 선호를 위한 개인적 선택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객관주의에 입각한 공공선의 강조 (나) 고전적 공화주의: (a)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균형 민주적 심의와 비지배적 조건을 위한 헌정적 질서의 필요, (civic freedom & personal freedom의 제도적 균형을 통한 주권적 자유의 확보) (b) 제 3자적 판단, 중립성을 믿지 않는다. 따라서 제 3자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 갈등을 변화로 제도화하는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심의제도의 모색. 즉 견제력에 중심을 둔 비지배의 제도화.

4) 본 연구자가 정의하는 고전적 공화주의의 입장(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종합)에서 볼 때, ‘신로마’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근대적 공화주의나 고전적 공화주의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갖고 있다. 장점으로는 (가) 자유를 비지배적 조건으로 파악함으로써 갈등 주체간의 심의의 조건을 구성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공했다는 점, 그리고 (나) 국가의 개입뿐만 아니라 국가의 개입에 대한 저항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모순되지 않는 일관된 설명의 틀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재조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문제는 (가) 지나치게 시민의 집단적 정치참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비지배적 조건의 상호주관적 구성 과정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점, (나) 시민의 견제력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보장되기에, 민주주의의 변화 추동력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제도적·비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 (다) 필연성과 예측성이라기보다 진리의 완전함과 궤변의 모호함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의 본질적인 개연성(probability)에 대한 이해가 더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가)는 비지배적 조건이라면 누구나 합의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이성적·비이성적 다툼(agon)이 ‘지배’ 하기 위한 목적을 수반하는 경우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의미하고, (나)와 (다)는 개개인의 욕망이 공공선으로 자동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결과론적 추론만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환되느냐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 역설로 통하는 절차적 결단(decision)이나 개인의 도덕적 선택(choice), 또는 시민적 공화주의의 극단적 형태에서 경험한 사회적 공학(social engineering)에 호소할 가능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또 다른 형태의 일원론(monism)이라는 비판과 로마 공화국이 갖고 있던 귀족적 성격만이 강조되었다는 비판이 전개되고 있다(Veit Bader 2005; Migue Vatter 2005; Kwak 2004; McCormick 2003).

본 연구자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지배적 상호성’과 ‘민주적 리더십’을 주장해 왔다(곽준혁 2003, 2005a, 2005b, 2007). 이 개념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그리고 마키아벨리에 대한 독서를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 세 가지 차원의 결합이다. (가) 첫째는 개인적 차원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공동체(koinonia politike)라는 개념을 정치적 우애(philia politike)를 통해 재구성한 것이다. 여기에서 자기애(self-love)는 이기주의(selfishness)와 구별되며, 자기애에서 출발한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는 비사회적 사회성(ungesellige geselligkeit)으로 압축된다. 테일러(Charles Taylor)식의 자기존재의 확인이나 라쯔(Joseph Raz)식의 자율성의 완성으로서 공동체 소속감까지는 아니라도, 상호주관적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는 자기애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상호이해 또는 상호존중에 초점을 둔 시민적 신뢰 또는 일치(homonoia)를 그 내용으로 한다(Aristotle, *Politics* 1263b1-4; *NE* 1167b4-14; *NE* 1162b5-20). (나) 둘째는 국가적 수준에서의 비지배적 조건의 구축이다. 이 때 비지배적 조건은 수적으로는 다수지만 권력과 부에 있어 약자인 일반 시민들이 지배집단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비지배적 상호성(Machiavelli, *Discorsi* I.4(9), I.5.(7), I. 5(20)), 그리고 집단적 갈등을 공동체적 조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신중함(phronesis, prudenzia)에 기초한 ‘민주적 리더십’이 민주적 절차와 정치적 결단의 긴장관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한다. (다) 셋째는 국제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관계의 설정이다. 여기에서 비지배적 상호성은 삶의 터전과 이러한 삶을 공유하는 동료들에게 가지는 애정이 자기 공동체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나 다른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으로 환원되는 것을 막는다. 근본적인 이유는 도덕성 또는 박애정신만은 아니다. 국제적 관계에서 비지배적 상호성의 위반은 곧 국내에서의 비지배적 상호성에 대한 시민적 신뢰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

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시민의식이 부패해 결국 공화국은 무질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Cicero *De Officiis*, I. 35). 즉 시민으로서의 품위(decorum)와 자신감으로 내면화된 비지배적 상호성이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발현되는 것이다.

<표 5> 시민적 공화주의와 고전적 공화주의

	시민적 공화주의	고전적 공화주의
인간관	(a) 상호의존적, (b) 군집의 필연성과 자연성	(a) 상호의존적, (b) 군집의 필연성은 거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공동체는 시장과 광장의 중간형태(Ungesellige Geselligkeit)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a) 참여는 자연성의 회복이자 필연적인 것, (b) 정치참여 그 자체가 목적	(a) 참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갖는 것, (b) 개인의 자기애(self-love)의 발현.
Civic Virtue	(a)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실체, (b) 명백하고, 자명하며, 전정치적(pre-political)	(a) 경험한 자유에 대한 애착에 기초(shared good), (b) 개인성의 산물이며, 심의를 통한 정치적 판단과 리더십이 요구됨.

3.

1) 고전적 공화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최근 혁신적 중도보수의 가치를 들고 등장한 ‘공동체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인식론적 차이를 무시한 조작적 정의다. 실제로 ‘공동체 자유주의’가 목적으로 하는 바가 “자유주의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공동체주의’가 “다양한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포용과 관용’, ‘통합과 화해’의 개념”이라고 정의되는 것에서 볼 때, 이 입장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결합 양식의 하나라기보다 곧 ‘자유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세일 2005, 22 & 68). 그 이유는 ‘공동체 자유주의’가 설정한 대립되는 입장들의 면면을 통해서 잘 나타난다.

극단화 시킨 대립구도에서 혁신적 중도보수의 입장으로 제시된 것들은 일단 자율성과 공공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 입장에서 ‘공동체주의’는 수사적 의미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 자유주의와 반자유주의, 다원주의와 획일주의라는 대립구도에서 보듯 자유주의적 보편주의와 자유주의적 주관주의가 인식론적 핵심이다 (박세일 2005 65-66). 그 결과 <표 1>에서 보듯, 인간은 궁극적으로는 고립되어 있고, 최종적 판단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이 때 언급되는 “신념의 수정 가능성”은 상호 의존적 관계를 전제한 심의와 사실상 배치된다. 즉 심의는 있을 수 있지만 결정은 전적으로 주관적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나) 시장주의를 앞세우고 국가개입주의를 정반대 입장으로 설정한 것은 오히려 정부역할의 축소와 시장원리의 확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의 제도화가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역할은 자유롭

고 공정한 경제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국한되어야 하고, 이에 반대하는 경우를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일상화” 하는 국가개입주의라고 규정하는 논리는 실제로 자유주의의 완성인지 아니면 자유방임주의의 완성인지 구별하기가 힘들다 (박세일 2005, 66). 이런 이유에서,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언급은 18세기부터 하이예크(Friedrich Hayek)에 이르기까지 언급되는 시장의 운용을 위해 시장 밖에서 행해지는 “최저임금” 또는 “최저생계”의 보장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Hayek 1944, 89-90). 다시 말하자면, 연대나 사회적 책임성의 공유가 아니라 평화적 공존을 가져오는 시장적 교환의 보장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이는 것이다. (다) 이외에 덧붙여지는 ‘공동체적 협력주의’는 공동체주의의 인식론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 개인적 선택 또는 개인의 도덕적 동기에 초점을 둔 박애주의 또는 자비심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공동체 자유주의’의 역사적 모형의 하나로 공화주의를 지적한 박세일 교수의 생각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인식론적 결합양식에 대한 고민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동아일보 2007년 1월 4일자). 어쩌면 자유주의의 원자화된 개인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문제의식만을 받아들이고, 문제의 해결은 자유주의에 호소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느낀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이유에서 박세일 교수가 “개인주의적 전통에 있는 자유주의는 정치적 공동체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주의의 이타주의적 요소를 적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고전적 공화주의자에게는 다소 공허해 보인다.

2) 서양의 고전을 통해 정리된 고전적 공화주의를 한국에 적용하려면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치사상의 연구자로서 지금까지 서양의 거대 담론들의 무조건적인 적용이 가져온 부작용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서양의 공화주의에 대응하는 한국적·동양적 공화주의의 모습을 찾는 작업도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적 공화주의에 대한 독서가 깊을수록 한국 사회에서의 필요한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 착란현상만은 아닌 것 같다. 한국 사회가 서양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것과 유사한 경험과 태도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되물게 된다. 한국 사회에 서양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인식론이 일상 속에 만연되어있지는 않은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자유주의만이 개인의 소유나 시장에 친화적인 것은 아니다. 고전적 공화주의가 기초하는 사상가들도 개인의 소유, 자율성, 그리고 삶의 보호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재정과 지출, 전쟁과 평화, 안보, 수입과 수출, 그리고 입법 등과 같은 주제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꼽았고(Aristotle *Rhetoric* 1359b19-23),

키케로는 소유를 보호하는 것이 정치공동체의 핵심적 의무라고 말했으며(Cicero *De Officiis* 2.21.73), 마키아벨리는 자유로운 경제행위와 사회생활을 노예적 삶(vivere servo)과 대비시켰다(Machiavelli, *Discorsi*, 2.2.43-48). 그리고 자유주의만이 다원성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 바로 자유주의에서 언급되는 갈등의 불가피성과 순기능에 대한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의 혼합정체에 대한 서술과 마키아벨리의 파당(fazione)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오히려 자유주의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두 가지 모두를 공공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비지배적 상호성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고전적 공화주의에서 비지배적 상호성은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바를 비지배적 상호성이라는 개념으로 민주주의와 연결시킨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엘리트는 심의하고 인민은 투표’ 하는 공화주의적 현실주의, 그리고 대표는 대표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대변(vertreten, act for)한다는 귀족적 공화주의의 모체로 간주되는 로마 공화정도 ‘비지배적 상호성’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로마 공화정에서의 비지배적 상호성은 다음 세 가지 res publica의 정치적 의미를 통해 구체화된다.

(1) 공화정(res publica)은 공중의 것(res populi)이다. 그러나 공중(populus)이란 모든 형식, 모든 종류의 인간 집단(coetus)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공중은 정의에 대한 합의(iuris consensu)와 공유된 이익(utilitatis communione)에 의해 형성된 연대(societus)이다(*Re Publica* 1.39). (2) 모든 공화정, 즉 공중의 관심은 반드시 어떤 심의기구(consilio)를 통해 정해져야 한다(*Re Publica* 1.41). (3) 모두가 한 명의 잔인함(crudelitate unius)에 억압받을 때, 그리고 정의에 대한 통합된 기반(unum vinculum)도 공중의 합의와 연대도 없을 때, 누가 그걸 공중의 것, 즉 공화정이라고 부르겠는가? (*Re Publica* 3. 43).

첫째, 공화정은 공중 또는 인민의 소유라는 정의에서 보듯이, 정의에 대한 합의와 공유된 이익에 기초한다. 이 때 합의나 이익은 근대적 의미의 사회계약적 동의나 물질적 혜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유함(communio)이라는 말의 당시 용례에 기초해 볼 때, 합의는 삶의 조건을 공유함으로써 나타나는 상호이해와 이에 기초한 교감과 공감대를 뜻한다. 둘째, 공중의 이익은 심의 기구를 통해 구성된다. 키케로가 말하는 심의는 선출된 대표 또는 원로원에서나 볼 수 있는 진지하고 평등한 귀족적인 대화(sermo)를 지칭하며, 이러한 종류의 심의는 상호존중을 내용으로 하는 품위(decorum)를 요구한다. 셋째, 통치의 정당성은 인민과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비롯된다. ‘공중의 것’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공화정은 인민의 정치행위 영역 또는 인민의 활동을 의미했다. 이러한 용례에 기초한다면, 세 번째 인용문의 핵심은 인민의 신뢰(fides)를 잃은 통치행위는 전제(tyrannus)라는 것이다.

상호성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세 가지 특성-조건의 공유, 상호존중, 그리고 신뢰-들은 자유(libertas)를 매개로 민주주의와 결합한다. 로마에서 자유는 시민적 삶의 조건, 즉 어느 누구의 지배에도 종속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했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자유는 노예(servitus)가 아닌 자유인(liber)의 상태, 즉 다른 사람의 지배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시민적 권리와 법적 보호의 총체를 의미했다. 이런 의미의 자유는 한편으로는 공화정에서 인민이 대외적으로 향유하는 독립과 자율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으로서 인민이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귀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한다는 집단규범을 표현하는 데 적용되었다. 전자가 귀족적 심의의 대상인 공공의 이익이 곧 인민의 자유로 인식될 수 있는 이유였다면, 후자는 대표와 대표되는 사람 사이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자 대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였다. 그 결과 삶의 조건인 자유를 빼앗는 전제적인 통치는 그 형태가 참주정이든 민주적인 정부든 공익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민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로 인식되었고, 적절한 심의를 위해 인민의 직접적인 통치보다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를 통한 심의를 지향했던 것이다 (*Re Publica* 1.51).

상호성의 원칙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로마공화정의 귀족적 성격은 민주주의와 결합할 수 없었을 것이다. 키케로가 “권력(potestas)은 민중에게 있지만, 정치적 권위(auctoritas)는 원로원에 있다”고 말하듯(*De Legibus* 3.12.28), 로마 공화정은 대표의 탁월성을 바탕으로 한 독립된 심의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인민 주권적 민주주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만약 상호성의 원칙을 구성하는 세 가지 특성과 이를 매개하는 자유를 통해 대표와 대표되는 사람이 연대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다면, 로마 공화정은 인민의 삶과 무관한 부와 혈통에 기초한 과두정에 불과했을 것이다. 상호성의 원칙은 반드시 민주적일 필요가 없는 공화정을 대표와 대표되는 사람의 연대와 신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함으로써,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로마적 결합형태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던 것이다.

3) 비지배적 상호성을 조정원칙으로 하는 고전적 공화주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체화된다. (가) 첫째, 자유로운 행위(action)가 아니라 자유로운 행위가 가능한 조건(condition)이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 집단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시민들 모두가 자의적 지배로부터 자유롭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 이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갈등상태에 있는 쌍방이 서로의 이해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기존의 힘의 불평등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갈등 조정 메커니즘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조건이 모두 충족될 수 있어야 민주주의의 규범적이고 실천적인 의미가 발현된다면 비지배적 상호성은 유토피아적 상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비지배적 상호성이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의 조건을 형성·유지·수정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그 결과 행위자 모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이성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 단순히 유토피아적 상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은 비지배적 상호성이라는 조건을 보장하고, 지배적 위치에 있는 집단에게는 권력의 한계를 설정하는 일관된 판단의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게는 타인의 자의적인 의지에의 종속을 견제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나)둘째, 비지배적 상호성에 입각한 민주공화국은 국가로부터 동일한 대우를 보장받는 소극적 시민성에서 사회적 권리의 제도적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정치적 견제력을 보장받는 민주적 시민성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비지배적 상호성에서 자유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은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시민에게 부여될 때 확보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호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자의적 지배에 대한 시민적 저항이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비지배적 상호성에 기초하는 민주공화국은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즉 차이의 인지를 넘어 사회적 권리의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보장, 그리고 동일한 이유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종속의 상태로 밀어 넣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다) 셋째, 민주공화국은 비지배적 상호성의 반복된 적용을 통해 ‘타인의 자의적 지배로부터의 자유’가 시민들의 행위의 준칙으로 내재화되는 과정을 또 하나의 목표로 상정해야 한다. 대립하는 사회세력들이 이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대립상황에 있는 상대방을 자기와 동일하게 배려하는 자세이다. 그러나 이런 호혜적 자세는 첨예한 갈등상태에 있는 쌍방에게 아무런 경험적 근거도 없이, 미래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이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비지배적 상호성의 지속을 전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쪽에게만 비지배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라고 요구한다면, 일상적인 갈등의 조정조차도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비지배적 상호성에 기초하는 민주공화국은 소극적인 의미의 자유를 일차적으로 보장하고, 반복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힘의 불평등 관계 속에서도 쌍방이 동일한 조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제도를 구현함으로써, 참여 주체들에게 호혜적 자세를 자연스럽게 내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 민족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전적 공화주의에서 찾고자 한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가) 첫째, 불평등의 근원을 독점이 아닌 지배에서 찾는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하다. 즉 정치적 삶(vivere politico)의 복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a) 여기에서 지배와 독점의 개념은 월저(Walzer 1983, 10-13)의 것을 수정한 것이다. 독점은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재화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자원이 희소한 경우 희소 자원의 독점이 곧 지배일 수 있지만, 지배적 재화(dominant good)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하기에 독점 자체가 지배일 수는 없다. 반면 지배는 사회적 재화를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재화의 독점이 아니라 재화의

내재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형성 또는 변경하는 전환가능성(convertibility)을 소유함으로써 유지된다. 즉 지배는 어떤 재화에 사회적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거나 창출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독점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b) 특히 심의와 토론에서 발생하는 참여 주체간의 힘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의 초점을 독점으로부터 지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심의의 과정 중에 발생하는 권력 구조, 집단간의 역학, 그리고 이념적 간극에서 비롯되는 힘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독점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지배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만약 참여주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독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갈등의 당사자들은 권력의 장악을 통한 일방적인 제도화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커진다. 주된 이유는 정치적 영역에서는 권력, 경제적 영역에서는 부, 문화적 영역에서는 자기정체성,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등 다양한 독점의 형태가 존재하고, 한 영역의 독점이 다른 영역의 독점과 연관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적 영역에서 생산수단의 독점을 해소했다고 해서, 또 다른 영역에서의 독점까지 막을 수는 없고, 그 결과 독점의 해소는 힘의 불평등을 가져온 구조의 실질적인 개선보다 지배와 피지배 세력간의 첨예한 권력투쟁의 결과로 당사자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국지적 형태의 독점은 인정하더라도 지배의 광범위한 전환가능성에 대해 시민들이 저항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는 방향으로 문제의 초점을 옮긴다면, 힘의 불평등은 그 정도만큼 실질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또한 일방적 제도화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와 대립된다면, 지배와 피지배에 초점을 맞추수록 갈등조정 메커니즘으로서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독점의 완전한 해소보다 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 견제력(contestability)을 중심으로 비지배의 조건이 구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c) 시민의 견제력을 제고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는 참여 주체의 열정과 의지가 충돌하는 논쟁적 요소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다. 무페(Chantal Mouffe 2002, 101)가 논쟁적 민주주의(Agonistic Democracy)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적하듯이, 절차적 합리성만으로 참여하게 갈등하는 쌍방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고, 적대감과 권력을 향한 열정 또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한다. 비록 무페의 이론은 심의를 통한 집단의사의 창출을 헤게모니 또는 지배담론의 형성으로 이해함으로써 민주적 심의가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또 다시 전환되는 것을 용인하는 단점이 있지만, 적을 정당한 적대자(legitimate adversary)로 용납할 수 있는 조건을 정치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즉 도덕적 선명성과 적응적 운동성에 호소하는 민주주의의 실패가 파당적 정치의 제도화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나) 분배의 문제가 인정의 문제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는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서 제한된 자유주의 국가의 역할이 비지배적 조건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공화주의 국가로의 대체를 필요로 한다. (a) 한편으로는 차별의 철폐만을 강조해 오히려 차별을 정당화했다고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를 비판

한 영(Iris Young)의 차이의 정치(the politics of difference),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경제적 부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구조의 재구성을 통해 계급적 차이가 없는 ‘분배’의 정치(politics of redistribution)로부터 불인정에서 오는 문화적 불평등과 상징적 변화 등을 통해 집단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인정’의 정치(politics of difference)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프레이저(Nancy Fraser)의 주장이 고전적 공화주의의 틀 내에서 가능하다(Young 1990, 156-191; Fraser 2003, 7-109). 다만 여기에서 고전적 공화주의는 멈추지 않는다. (b) 인정의 문제는 ‘차이’의 인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존엄(dignitas), 즉 비지배적 조건의 상호인정을 의미한다. 고전적 공화주의에서 비지배적 조건의 상호인정은 개개인의 도덕적 의사에만 맡기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으로서 존엄(dignitas)을 의미하는 비지배적 조건의 유지와 구축에 국가 또는 공동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곧 국가개입주의나 전체주의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의 개입은 개개인의 비지배적 조건을 파괴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고전적 공화주의 내에서 배양되고 제도화된 시민의 견제력을 통해 저지 또는 방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c) 다문화 공존의 틀을 고전적 공화주의의 애국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때 애국심이 의미하는 바와 자유주의적 민족주의(liberal nationalism)와의 차이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연대(solidarity)가 아니라 신뢰(trust)에 초점을 둔다. 즉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비지배적 상호관계를 통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경험을 한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신화나 이데올로기에 의해 부여되는 연대가 아니라 시민적 경험에 바탕을 둔 신뢰인 것이다. 둘째, 안정이나 영광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책임감을 공유하고자 한다.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시민적 공화주의에서 주장하는 맹목적 충성은 원하지 않는다. 비지배적 자유를 보장하는 진정한 정치체제(vera patria)에 대한 애착이며, 이러한 애착은 이와 같은 정치체제가 없다면 구축하고 있다면 유지하는 동력이 된다. 셋째, 비지배적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비지배적 자유가 내면화된 사람들은 시민적 기풍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러한 기풍은 다른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도 비지배적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한다.

(다) 민주적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심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결점 중 하나는 심의만 강조하고 결정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a) 참여정부 등장 이후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갈등조정 메커니즘의 부재다. 사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수반하고 또 갈등을 통해 심화된다. 그러나 갈등을 조정하는 원칙과 제도가 없는 민주주의는 그 기능을 할 수 없다. 심의와 심의 민주주의는 설득을 통해 의사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심의와 심의 민주주의는 어떤 방향으로든 결정(decision)이 나와야한다는 점에서는 전자와 후자는 차이가 있다. 전자는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후자는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의를 심의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비지배적 조건

의 제도화가 모색되어야 하고, 심의 민주주의의 결정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당(fazione)을 통한 민의의 수렴과 책임성의 담보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b) 고전적 공화주의는 정치의 개연성을 신중한 리더십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가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명명한 고전적 공화주의의 신중한 리더십은 탈권위주의시대의 탈권위를 막는 통치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사실 선거전에서 필요한 리더십이 아니라 통치에 필요한 리더십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적 리더십은 자유방임이나 후견적 태도가 아니라 대중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통한 비대칭적 상호성(asymmetrical reciprocity)이라는 조건에서 출발한다. 즉 통치자가 대중의 의견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대중의 의견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를 정치적 사려의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실제로 통치자는 대중이 갖고 있는 의견(endoxa)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통치자는 대중의 의견을 초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양성에 있다. 즉 대중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에 대중의 의견은 동질적일 수 없으며, 상호 대립되거나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진리가 각양각색일 수 있다. 따라서 통치자는 대중들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의견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전체적인 조망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통치자는 대중의 의견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대중의 의견을 극복해야 한다는 비대칭적 상호관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마치 개별 기능공의 행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건축가(architektōn)와 같이, 통치자에게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고 전체적인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Aristotle, *NE* 1094a6-18, 1094a26-b11). 여기에서 민주적 리더십은 대중 의견의 이질성이 형성해 놓은 정치적 불확정성에서 가장 적절한 수단을 찾는 정치적 기술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전적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민주적 리더십은 대중의 입맛에 아부하는 기만적 선동과 분리되며, 또한 절대성을 추구하는 과학적 논증과도 구별되는, 이른바 정치적 실천에서 필요한 가능성의 미학(artefetto della promessa)을 지향하는 것이다 (Aristotle, *Rhetoric* 1359b9-16).

5.

민주주의의 생명력은 변화를 제도화하는 힘에 달려있다. 여기서 변화의 제도화란 주어진 정치제도의 틀 안에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요구들이 합의된 제도화의 방법까지 바꾸어버릴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제도화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 상반된 단어가 합쳐진 모순어법(oxymoron)이듯, 어떤 종류의 헌법재판을 통해 변화의 제도화가 완성될 수 있을지는 민주주의의 미래만큼이나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사람은 운동에 선재하는 신중함으로 반복되는 문제의 본질과 현상적 조합을 분별해야 한다. 르네상스시대 정치적 의미로 최초 사용되었던 혁명(revoluzione)이라는 말이 별자리가 1년을 주기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반복을 묘사한 말로부터 파생되었듯이, 변화를 꿈꾸는 사람은 반복되는 일상으로부터 새로운 사고의 자료를 발견하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연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은 당면한

문제에 얽힌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압도되어 변화를 제도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정치적 갈등을 통해 반영된 절박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략할 위험이 있다.

전체적으로 이 글은 고전적 공화주의가 한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이다. 비지배적 상호성이 기초하고 있는 고전적 공화주의는 아직까지 한국학계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지 못한 내용들이다. 이런 가운데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전략적 선택이나 조작적 정의에 그치는 현상이 자주 목도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공화주의를 보수 또는 진보라는 이분법 속에 어느 한 진영의 전유물처럼 치부하는 것도 정치적 사려가 결여된 처사로 보인다. 실제로 역사 속에 등장한 고전적 공화주의는 가장 체제 유지적일 것 같은 때에 가장 혁명적이었고, 가장 혁명적일 것 같은 때에 가장 보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바로 이러한 역설적인 모습이 정치의 개연성을 변화의 가능성으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고전적 공화주의의 열정이며 지혜의 표현이다. 본 연구자는 비지배적 상호성이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로부터 시민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주주의의 규범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곽준혁. 2003. "민족주의 없는 애국심과 비지배 평화원칙," 『아세아연구』 46권 4호. 311-340.
- 곽준혁. 2005a.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체제의 두 가지 원칙." 『한국정치학회보』 . 39:3, 33-57.
- 곽준혁. 2005b. "심의민주주의와 비지배적 상호성." 『국가전략』 . 11:2, 141-168.
- 곽준혁. 2007. "정치적 수사와 민주적 리더십: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재구성." 『국가전략』 13권 1호. 147-171.
- 권재현 & 유성운, "대한민국, 21세기 신정치이념 4," 『동아일보』 2007년 1월 4일자.
- 박세일. 2005. 『나라선진화와 당의 이념: "공동체 자유주의"를 향한 21세기 혁신적 중도 보수의 길』.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소.
- Aristotle. 1975[1926], *The Art of Rhetoric*, John Henry Freese 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Aristotle. 1962[1926], *Nicomachean Ethics*, H. Rackham 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Aristotle. 1959[1932], *Politics*. H. Rackham 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ader, Veit. 2005. "Against Monism: Pluralist Critical Comments on Danielle Allen and Philip Pettit." In *Political Exclusion and Domination*. ed. Melissa Williams and Stephen Macedo. 164-175.
- Brunt, Peter. 1988. *The Fall of the Roman Republic and Related Essays*.
- Cicero. 2000[1928]. *De Re Publica & De Legibus*. Clinton Walker Keyes 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icero. 1968. *De Officiis*. Walter Miller 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ayek, Friedrich. [1944] *The Road to Serf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wak, Jun-Hyeok. 2004. "Nondomination and Contestability: Machiavelli contra Neo-Roman Republicanism,"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8, No. 4. pp.219-239.
- Machiavelli, Niccolò. 1984. *Discorsi sopra la prima deca di Tito Livio* (Introduction by Gennaro Sasso with Preface and Notes by Giorgio Inglese). Milan: Biblioteca Universale Rizzoli.
- McCormick, John. 2003. "Machiavelli against Republicanism, On the Cambridge School's "Guicciardinian Moments."" *Political Theory*. 31:5, 615-643.
- Mouffe, Chantal. 2000. *The Democratic Paradox*. New York: Verso.
- Patterson, Orlando. 1991. *Freedom in the Making of Western Culture*. New York: Basic Books.
- Vatter, Miguel. 2005. "Pettit and Modern Republican Political Thought." In *Political Exclusion and Domination*. ed. Melissa S. Williams and Stephen Macedo.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Walzer, Michael. 1983. *Spheres of Justice, A Defense of Pluralism and 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 Young, Iris.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와 새로운 보수주의의 도전*

안병진(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경희사이버대 교수)

‘거친 문제해결’의 시대: 케리나 고어보다는 부시를 원하는 대한민국 유권자

- 그간 집권진영은 불안정하고 요란한 수사, 4대입법, 개헌 등 교조적 아젠다, 엘리트주의 등 여의도 정치계급의 정치문화, 정책의 비일관성, 실행에서의 무능 등으로 시민들 속에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옴.
- 관습적 견해와 달리 집권진영은 실질적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제대로 실행하는데 미비한 점을 적잖이 노출(예: 사학법 입장 후퇴,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 의회 견제기능 상실)
- 더구나 동구, 남미에서 나타난 ‘신자유주의 포퓰리즘’ 레짐의 특성을 보이며 사회적 양극화 가속화(신자유주의적 변화를 주도하며 이를 막는 진영을 국민과 대립된 기득권으로 규정하는 포퓰리즘 연술 결합)
- 위의 결과로 집권진영의 사회적 기반이 일부 핵심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해체되고 2007년 대선의 핵심 정신중 하나는 ‘안티 노무현’으로 집약됨. 보수나 진보 진영 모두 내용적으로 ‘안티 노무현’의 프레임을 유지하지 않는 진영은 반드시 실패할 것임.
- 시민들 전반의 ‘안티 노무현’ 정서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반감을 넘어 그간 민주화를 이끈 진보 세력 전반의 거버넌스 능력에 대한 심각한 회의로 귀결됨.
- 반면에 시민들은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이를 진보라 인식하고 있음. 그러하기에 이명박 후보가 시민 여론조사에서 진보적 후보로 인식될 수 있음.
- 이는 마치 미국의 2000, 2004년 유권자들이 비록 거칠지만 문제를 강하게 해결하고자 한 부시를 지지한 이유임. 당시 좌파 논객인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그래도 부시는 무기력한 리버럴과 달리 뭔가를 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충격적 전향을 선

* 토론용 메모에 불과하므로 저자와의 상의 없는 인용을 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한 바 있는바, 현 한국의 중도적 유권자층이 정확히 같은 이유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고 있음.

- 이는 과거 기독교의 후보로 인식되어 노무현 후보의 포퓰리즘적 캠페인 앞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한 이회창 후보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정치지형임을 시사해줌.

- 비유하자면 이러한 강한 문제해결형, 그리고 워싱턴 바깥의 아웃사이드 정치는 지책의 표현을 빌자면 코난 등 파시즘적 영화의 주연이었던 아놀드 슈왈제네거식의 '소프트 파시즘' 정치에 대한 요구.

- 아이러니한 것은 911 테러는 클린턴 같은 미국 리버럴들의 시장근본주의적 지구화가 가져온 역풍이기도 한데 이를 미국 시민들은 시장근본주의보다 더 거친 소프트 파시즘적인 부시 레짐으로 해결하고자 함. 마찬가지로 현재 이명박 스타일의 강한 해결력에의 기대는 노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급진 개혁의 부작용을 더 심한 개발주의/신자유주의적 성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 반면에 워싱턴 정치계급으로 익숙한 케리나 IT, 환경에서 21세기 패러다임을 제시한 고어는 당시 유권자들 속에서 수용되지 못함. 마찬가지로 2007년 대한민국 정치지형에서 여의도 정치계급 출신 개혁파나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후보는 거친 문제해결형의 후보를 이기기 매우 어려운 조건임.

-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후보는 이후 고어의 문제제기가 정치적 경험의 반복을 통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듯이 2007년 이후는 유력한 주자나 새로운 신진보 노선의 리버럴 정당의 구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일각에서는 한미 FTA의 성공적 체결이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을 침식하고 여권의 새로운 부활을 가능하게 한다고 판단하지만 이는 지나친 기대감에 불과함.

- 물론 한미 FTA 체결 이후 노대통령 지지율의 반등은 규범적 평가를 떠나 성과를 만들어낸 문제해결형 정치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를 의미. 하지만 노대통령이 대선 주자가 아니며 또한 문제해결형 정치의 이미지라는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여권보다 강점을 가지는 보수야권 후보의 대중적 토대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한미 FTA 체결은 이후 내용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에 있어서 유동적 여지가 많음.

‘대중적 보수주의’ (popular conservatism) 시대로의 이행기

- 발표자는 2007년 2월 발표한 글에서 올해는 단순한 정권 담지자의 교체가 아니라 정치, 사회 모델의 변화를 의미하는 ‘레짐 체인지’가 시작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음¹⁾. 이는 그 후 한미 FTA 체결, 동북아 정치질서의 변모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음. 현재는 각 정치세력들이 경쟁하고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해나가는 새로운 정치질서로의 이행기로서 이후 대선 및 총선을 거치면서 공고화될 것으로 보임.

- 이 이행기 과정에서 중도우파, 리버럴 좌파, 리버럴 우파, 구좌파의 4가지 경로가 향후 자신들의 레짐 형성을 위해 쟁투를 벌이고 있음.

- 물론 4가지 경로 중에서 현재로서는 대중적 후보군을 가지고 있고, 안티 노무현 시대의 최대 수혜자인 중도우파의 길이 매우 높은 현실화의 가능성.

- 이 중도우파는 선진체제라는 커다란 깃발 하에 성장/경쟁/개방/반 이익집단(노조 등의)/한미동맹 강화 등의 담론 구조를 가지며 현 시기 대중적 차원에서 담론을 지배하고 있음.

- 이명박 후보는 물론이고 보다 강경보수로 흔히 알려진 박근혜후보도 당선된다면 학습기간을 거친 후에 궁극적으로는 울트라 라이트보다는 중도적 스탠스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왜냐하면 한반도 주변 구조의 지각변동 및 국내 양극화 심화에 따른 갈등의 악화는 보다 유연한 중도적 스탠스를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

- 일각에서는 교육, 주택 등에서 공공성 확대에 대한 여론이 다수임을 들어 신진보적 시대로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지만 세력결집을 넘어 집권으로까지 2007년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움. 왜냐하면 안티 노무현의 시대의 강한 자장과 신진보노선의 현실화된 전형이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 미국도 2000, 2004년 거의 모든 이슈에서 유권자 다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후보는 중도우파 공화당 후보를 연거푸 선택함.

- 더구나 최근 노대통령의 한미 FTA 추진은 한국에서 미국형 모델을 추구하는 대중적 보수주의의 국내외적 토대를 강화함.

- 교육, 주택 등에서 공공성 요구를 가지고 대한민국 시민들의 진보성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는 안 됨. 표피적 여론조사의 대답보다는 시민들의 심층적이고 복합

1) 줄고, “대한민국 레짐 체인지”, 창작과 비평 2007년 봄호.

적 욕망을 들여다볼 필요 있음. 대한민국 시민들은 국가의 공공성에 대한 신뢰, 기대치가 낮기에 시장주의적 해결방식을 통한 코리안 드림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것도 사실. 이는 얼마든지 중도우파적 후보의 창조적인 이슈 프레임에 견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마치 외교노선 등에서 20세기의 패러다임을 가진 부시의 당선은 우연이 아니라 미국의 집단의식의 현 수준의 구현인 것처럼 그간 이명박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 는 대한민국 시민의 집단적 욕망의 현 단계를 반영.

20세기형 보수주의와 21세기의 크나큰 괴리

-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눈앞에 다가온 집권의 준비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고 21세기의 급변하는 현실에 매우 뒤쳐져있음. 21세기형 한국의 자본주의는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위해서 초당적 과제인, 신뢰자본의 축적, 재벌중심 성장주의의 한계의 돌파, 창조 지식 사회의 구축 등을 요구하나 현재 보수주의 정치세력은 이러한 시대적 성격과 감수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함.

- 특히 창조 지식 사회의 구축은 기존 보수의 문화적 감수성이 아니라 미국의 스티브 잡스처럼 그람시적 비주류 감수성의 획기적 수용 속에서만 가능한데 아직 한국의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함.

- 한국 시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라고 알려진 미국의 시민보다도 역동적이며 그러한 성격이 한국 자본주의의 천민성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혁신을 만들어옴. 이러한 역동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미국의 토플러, 킹그리치 전 하원의장 같은 미래지향적 보수주의보다 더 급진적 보수주의가 필요한 현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주의는 토플러의 기준으로 볼 때 공룡의 이미지.

- 동북아의 급변하는 구도는 마치 닉슨의 새로운 사고나 레이건의 재선 이후 평화 사도로의 변신처럼 보수주의의 급진적 변모를 요구하나 미국이 전략적으로 요구하는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등의 다소 희극적 상황.

- 20세기 형태의 이념적 기반을 가지는 부시의 집권이 이라크 전쟁 실패, 국내 정치, 경제적 양극화 심화, 미국 헤게모니 약화 등 큰 부작용을 낳은 것처럼 천민자본주의와 미국형 시장전체주의의 결합으로서 중도우파의 집권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후 통치불가능의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는 가능성.

- 더구나 대부분의 석학들이 전망하듯이 이후 장기적으로 미국의 힘은 쇠퇴하는 추세인데 이는 한미 FTA 등을 통해 미국형 모델에 올인하는 한국 보수주의의 미래를 어렵게 함. 유럽의 시민주의적 경향을 창조적으로 접목하고자하는 송호근 교수, 남재희 전의원등의 양식있는 보수주의가 한국에서 수용되려면 아직 더 많은 보수주의의 위기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임. 위의 전반적 기조 하에 아래는 각 부분에서 한국 보수주의의 현실에 대한 스케치임.

보수주의 주요 부분의 현실

1) 한나라당의 부분적 혁신과 근본적 한계

- 부동산 이슈 등에서 그간 홍준표 의원, 오세훈 시장의 보수적 포퓰리즘은 한나라당 이미지 변신에 기여함. 그간 수구적 이미지를 보여온 홍준표 의원은 한나라당과 서민층이라는 이질적으로 각인된 두 가지 범주를 창조적으로 결합하는 맹아를 보여주었고 임대주택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전향적 행보는 심지어 좌파 논객인 우석훈 교수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냄. 더구나 시민 창안 센터 등의 실험을 통해 21세기적인 보수주의의 맹아적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 기초연금제에서도 민노당과의 연대의 경험은 한나라당과 서민층의 결합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시사점을 남김. 한국에도 개혁적이고 기득권 타파적인 미국 공화당의 존 맥케인 의원과 같은 ‘개혁보수주의 포퓰리즘’ 이 얼마든지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음.

- 하지만 최근 재보선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시대착오적 선거법 개정 등 구시대적 행태에서도 드러나듯이 수십년간의 기득권 정당으로 가지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

- 아직도 한나라당이 근본적 혁신하기에는 이전의 2004년 탄핵 역풍 위기 등이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함. 더구나 한국의 개혁, 보수는 서로 서로의 무능으로 인해 상대의 근본적 혁신의 계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적대적 상호의존의 관계.

- 원희룡 등 온건보수 의원이 당 주류로부터 배척당해오고 남재희 전의원, 손학규 지사, 송호근 교수의 온건보수주의 비전이 수용되지 못하는 이념적 상상력의 빈곤함 속에서 한나라당의 미래는 매우 어두움.

- 수십년간 기득권 체질에 익숙한 한나라당의 인적 구성, 정치문화는 향후에도 부단히 보수야권 후보의 경쟁력과 당선된 보수 대통령의 통치력을 침식시키며 일부

뉴라이트 진영 중심으로 새로운 보수 정당의 창출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을 시사해줌.

2) 거대보수미디어

- 무능하고 시대적 감수성에서 뒤떨어진 한나라당에 비해 거대보수 일간지는 현재 한나라당의 사실상 씽크탱크나 메시지 팀의 기능을 수행.

- 미국의 스트라우스주의자들의 뉴포폴리즘의 탁월한 구사처럼, 부동산, 교육, 개방 등 이슈에서 서민의 관점에서 보수주의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있음.

- 하지만 텔레비전, 라디오, 온라인 매체 등에서도 미국 폭스채널의 빌 오랄리 쇼 같은 대중적 보수주의의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한계.

- 주목할 것은 중앙 등이 주도하는 위스타트 운동 등의 공동체주의 운동. 이는 비교하자면 미국 공동체주의자 에치오니가 스트라우스주의자인 갤스턴 등과 함께 시도한 창조적인 캠페인과 유사함. 예를 들어 클린턴 행정부가 가장 자랑하는 정책 중 하나인 AmeriCorps, SeniorCorps 등을 들 수가 있음. 이는 공동체 유대감 강화를 위해서 전국적 서비스 조직을 창설하여 미국 시민들에게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있음. 국제적으로는 공동체주의 비전에 앞장섰던 케네디 행정부 시절부터 PeaceCorps 라는 해외봉사 기관을 창설한 바 있음.

- 이는 신자유주의에 공동체주의를 절충적으로 결합한 박세일 교수의 공동체자유주의 노선보다 더 효과적인 운동으로 보임. 이 운동은 전개양상에 따라서는 향후 한국에서 보수적 진영, 기업국가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3) 한국식 네오콘의 등장²⁾

- 현재 뉴라이트 진영은 한국 사회의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함. 하지만 이 뉴라이트 진영에는 실질적 콘텐츠의 변경 없이 단지 브랜드 자체만 변경한 올드라이트도 혼재하고 뉴라이트 스스로도 일관된 사상체계를 세우고 있지 못함.

- 진보 일각에서는 이러한 뉴라이트 진영의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진정성과 미래에 대해 냉소적 경향이 강함. 하지만 이들 다양한 경향 중 과

2) 아래의 내용은 2006년 9월 세교포럼에서의 본인의 발표내용을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거 NL, PD 운동가인 홍진표, 신지호씨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연대는 미국식 네오콘의 등장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미국에서 트로츠키 좌파 운동권 출신이 많은 네오콘 1세대의 핵심 문제의식은 지나친 진보주의적 행보에 대한 테르미도르적 반동. 이는 두 가지로 나타남. 1) 구사회주의 및 이에 동조하거나 유향적 태도를 보이는 지식인들에 환멸감, 2) 68년 혁명 이후 동성애, 차별시정조치 등에서 지나치게 진보적인 보헤미안적이고 권리지상주의적 리버럴리즘에 대한 위기감

-물론 네오콘 내부에 일정한 감수성의 차이는 존재함. 사상적 대부격인 철학자 스트라우스는 미국을 고대적 귀족 국가로 변형시키고자 하고 어빙 크리스톨 등의 핵심 선구자는 미국 근대 초기의 보수적 질서를 이상화함.

- 한국의 경우에 신지호 교수 등의 핵심 문제의식은 북한에 대한 지나치게 유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진보의 경향에 대한 환멸감과 그들 시각에서 참여정부의 분배 등에서의 좌파적 성향, 과거 건국의 역사에 대한 부정 등에 대한 심대한 위기 및 비판의식.

- 미국, 한국 공히 이들의 위기감 표현은 단순히 권력 장악의 방편만은 아님. 두 나라 모두 구사회주의권에 대한 이들의 문제의식은 부분적으로 타당함. 미국 네오콘의 대부인 스트라우스가 미국 리버럴리즘의 상대주의에 대해 맞서서 절대주의 투쟁을 옹호한 것은 나름대로 문명 수호의 차원의 성전에 해당됨. 한국의 장면정권에 해당되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유향한 몰락을 목격한 스트라우스에게는 미국 리버럴의 문제는 또다시 다가오는 악몽일 수밖에 없음.

- 한국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북한의 수용소와 남한의 독재정권의 탄압을 상대주의적으로 동등하게 파악하거나 북한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정보 부족의 이유로 주저하는 일부 진보진영의 멘탈리티의 문제는 이들에게 심대한 위기감 심어줌(폴 포트의 만행을 믿으려하지 않았던 반미지성 촘스키의 어리석음과 유사한 멘탈리티). 나아가 노정부나 친 노정부 북한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정세 예측에 실패하는 것은 단지 단기적 정세인식의 오류를 넘어서 이들 네오콘들의 의혹과 자기 확신을 정당화시켜주는 기제.

-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이들의 자학사관 지적도 부분적으로 타당함. 아이러니한 것은 대한민국 선진화의 토대는 노동 등 진영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이나 일부 진보진영의 감수성은 대한민국의 선진성을 부정함. 예를 들어 87년 7, 8월 노동자 대투쟁이 없었다면 기업의 자본구성 고도화도 없었음. 뉴라이트는 이러한 변증

법적 과정을 노동의 집단이기주의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기업의 혁신으로 단순화, 왜곡화시켜 규정하는 데 성공함. 이는 마치 안토니오 네그리의 지적처럼 노동이 추동한 지구화의 지형에서 노동이 수세적이고 수구적인 것으로 비춰지는 것보다도 유사함.

- 한국의 네오콘들은 미국의 네오콘처럼 북한등 불량국가에 대해 수세적이거나 봉쇄적 태도를 넘어 적극적 레짐 체인지를 추구함. 신지호 교수는 이를 “연성 붕괴”로 표현하는 데 이는 미국 리버럴들의 지혜로운 햇볕정책인 “연성 진화”(regime evolution)라기 보다는 정권교체에 가까운 개념임.

- 이들의 적극적인 레짐 체인지의 관점이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 전술적 타당성을 떠나서 북한의 문제가 더 드러나는 것에 비례하여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이고 더욱 강한 운동으로 거듭날 것임. 이미 미국은 보수 기독교 진영에게 있어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사소한 이슈가 아니라 마치 쿠바문제처럼 질적으로 비화되고 있음.

- 트로츠키 운동권 출신이 뿌리인 미국 네오콘의 특징은 운동권 출신답게 정책을 넘어선 사상전, 그람시적 문화 헤게모니 투쟁, 메시지(대립 구도 설정이나 상대의 취약점 등) 설정,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열정과 전투성, 포퓰리즘의 위력과 중요성을 매우 잘 이해하고 결국은 권력 핵심부 장악에 성공함.

- 한국의 경우 자유주의연대의 치열한 사상전, 천하 4분론(수구우파, 수구좌파, 혁신우파, 혁신좌파)등의 적절한 대립 구도 형성 등 네오콘들의 정치활동 양식을 보면 위 원칙을 기존 ‘웰빙당’인 한나라당보다 훨씬 잘 이해함. 신지호 교수는 이를 “영혼이 없는 정당”,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그 어떤 정신적 가치”가 부재한 정당으로 표현.

- 미국 네오콘은 선구자인 어빙 크리스탈 등의 주도로 기존 리버럴들을 특권층과 등치시키고 자신들을 서민들의 전투적 대변자로 정립하는 신포퓰리즘 이론, 실천에 능함. 한국의 네오콘은 입으로는 포퓰리즘(이때는 인기영합주의의 의미로 어휘가 잘못 사용됨)을 노정부의 가장 큰 잘못으로 비난하면서 열린우리당 보다 훨씬 뛰어난 신포퓰리즘을 구사하고 있음. 비록 깊이있는 이론적 기반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예를 들어 신지호 교수는 신간에서 기존 리버럴들을 신평권층으로 규정하면서 신포퓰리즘을 나름대로 적용하고 있음.

- 하지만 이들은 미국의 네오콘이 사상적으로 스트라우스, 한나 아렌트, 다니엘 벨 등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의 교차, 풍부한 사상적 토양의 적절한 퓨전에서 성장

한 것과 달리 현재까지는 자신들의 비전에 대한 근거에 있어 매우 사상적으로 빈곤하거나 모순적이고 일부는 지나치게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들은 현재 네오콘의 핵심 정수인 문명 수호를 위한 절대적 가치 투쟁과 보다 리버럴적인 다원주의적 자유주의 수호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상태. 미국의 스트라우스나 미국 네오콘들과 달리 이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한다면 관용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

- 하지만 이들의 문제의식이 북한의 현실, 참여정부의 실패 등에 대한 부분적으로 타당한 진단에 근거하기에 미국에서도 검증되었듯이 향후 새로운 보수정당 추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결론

- 그간 곁으로의 극단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노정부와 보수야권 진영은 극적으로 상호 수렴되어오면서 대중적 보수주의의 토대를 강화해옴. 향후 레짐 체인지는 한국 보수주의의 낡음과 무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중적 보수주의의 시대를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리버럴 진영들은 이러한 대중적 보수주의의 현실화에 맞서서 기존의 낡은 비전, 정치문화의 대대적 혁신이 요구됨. 새로운 비전의 핵심은 단지 권리, 참여만을 특권적으로 강조하는 자유주의 담론을 넘어 보다 공공성, 사회적 책임과 역동적 혁신, 성찰적 시민성 등을 강조하는 공화주의적 문제의식을 21세기적으로 변형하는 것. 21세기 지구적 자본주의의 눈부신 혁신과 민주주의적 발전은 고전적 이념으로만 오해되어온 공화주의가 매우 적실성을 가지는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음. 정치문화의 대대적 혁신은 강렬한 열정과 공감, 희생과 헌신, 시민정치의 내용과 형식을 가지는 ‘도전자 브랜드’를 강력하고 일관되게 형성하는 것임. 도전자 브랜드의 관점을 모든 측면에서 철저하게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기 1등 브랜드인 보수야권의 후보를 벤치마킹하고자하는 시도는 의도와 무관하게 정권교체는커녕 장기적으로 대중적 보수주의 시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지금은 소극적인 한나라당 집권저지에의 협소한 시야가 아니라 대중적 보수주의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신진보주의 시대의 토대를 구축할 것인가의 넓고 장기적 시야를 가져야 함.

■ 제2부 ■ 2007대선의 주요 쟁점 분석 및 정책방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박건영(가톨릭대 교수)

연구목적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의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과 2007년 2월 13일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면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데 각각 합의함으로써 1996년 클린턴-김영삼 대통령이 주도하여 시작한 ‘4자회담’ 이후 10여년 만에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간 회담이 새롭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6자회담과 함께 북핵과 전쟁 미종료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고무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6자회담이 이제 목표를 향한 첫 관문을 지났을 뿐이고 원칙합의의 이행과정이 쉽지 않은 조정과 협상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반도평화체제 논의가 시기상조의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9.19와 2.13은 분명히 6자회담과 평화체제 논의 포럼이 병행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또 평화체제의 논의와 전략이 6자회담의 장래와 직접 연결되고 또 그 과정에 피이드백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한국의 국익과 한반도의 민족이익을 아울러 확보하는 평화체제구축전략이 치밀히 준비되어 있을 때 비로소 6자회담의 향방에 따른 기민한 수정과 보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도 이러한 논의는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 글의 목적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한국의 전략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의 의미

한반도 평화체제는 현 정전 상태가 전쟁 종료의 상태로 전환되고, 남북관계 및 국제관계에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확인되고 군사적으로 보장되는 상태이며,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전쟁을 하지 않은 타국과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일반적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를 말한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적대행위 정지 목적의 군사적 성격의 협약이며, 평화협정은 전쟁의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교전당사자간 정치적 조약으로서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하나의 과정 또는 방법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회담개최 시기

한반도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회담개최 시기는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및 모든 현존하는 핵 시설의 불능화를 이행” 하고, 한국 미국 등은 북한에 “95만톤

에 상응하는 대북 지원을 완료” 한 직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시급히 해결하고자 하는 중대 현안은 핵 문제이므로 참가국들이 이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핵 문제 해결의 관건은 대북안전보장에 있으므로 평화체제 논의를 핵 문제 해결 이후로 미루자는 것은 협상상대의 사활적 이익을 무시한 비현실적 발상에 기초해있을 뿐 아니라 핵협상 자체를 일탈시킬 위험한 주장이다. 평화협정 타결 목표 시점은 북핵 폐기와 북미관계정상화가 교환되는 시점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평화협정의 체결이 어렵다면 북핵 폐기와 북미관계정상화의 교환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도 수용 가능하다. 평화협정은 NLL, 주한미군 문제 등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미관계정상화가 평화협정의 핵심 (대북안전보장, 주한미군의 성격 등)을 사실상 구성한다는 사실,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 문제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사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대두할 문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누가 당사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이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관국이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전협정을 대체” 한다는 입장으로 이른바 ‘2+2’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평화체제는 기본적으로 북미간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한국의 군사적 실체를 인정하고, 당사자 문제와 논의방식 문제는 추후 검토해 나가자” 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는 평화협정의 방식으로 4자회담의 유용성을 인정한 바 있고, 최근에는 북한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 남북미중 간의 평화협정이 북한의 대안이라 판단된다. 미국은 평화체제는 원칙적으로 남북이 해결할 문제이며, 북핵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13 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고려할 때 4자회담은 유망한 대안이다. 민주당의 의회지배와 향후 미국 정치지형의 변화 가능성은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와 연동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역시 4자회담이 중요한 채널이 될 것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고려하여, 직접당사자를 남과 북으로 간주하고 남북간 논의를 통한 정전체제 해소를 지지하지만, 다른 한편,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미국이 주도하여 “중국이 배제되거나, 북미간 협정 체결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이 강화되거나, 러시아 일본이 논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은 경계하는 입장” 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은 직접당사자가 아니지만 한반도 문제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4자회담보다 6자간 평화회담을 선호하거나, 간접적 방식으로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

당사자 문제와 관련해 (1) 북미 (2) 남북미 (3) ‘2+2’ (4) 남북미중 등의 대안이 있으나 기본원칙은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직접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유엔군사령관의 자격으로 미군 장성이 정전협정에 서명했지만 한국전쟁에서 공산군과 싸운 군사적 실체는 미군이었으므로 오랜 군사적 대치의 한 당사자인 남한과 함께 정전

체제 해소의 회담에 실제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체제를 담보할 수 있는 조건과 관련된 것이다. 남한이 안보위협을 느낀다면 그것은 북한의 무력일 것이다. 또 북한이 안보위협을 느낀다면 그것은 한미연합군사력과 미국의 무력과 의도일 것이며, 아울러 미국은 북한의 대량과괴무기가 자신 및 국제사회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체제는 이들 모두가 서로에게 가하는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포기한다는 점을 포함해야 의미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남한 북한 미국은 평화협상의 직접당사자로 참여하고 이행의 의무를 공동으로 져야 타당하다 하겠다. 더구나 6자회담의 핵심이 북핵폐기와 대북안전보장이라 할 때,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미국이 NPR 등으로 자신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따라서 핵과 평화체제 문제는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할 때, 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직접참여가 불가피하다.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여했고, 정전협정 서명국이므로 원할 경우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간 불가침이 합의되었으므로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먼저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따르면 “남과 북은 현 정전 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 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되어 있다. 즉 남한이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로 의미를 잃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미평화협정 주장은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대안이고 따라서 현실성을 결여한다. 즉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은 남한이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 당사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극단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회의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협상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북미의 이익만을 담은 합의를 이행만 하는 처지로 전략하여 심각한 국내정치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대안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평화협정의 내용과 남북기본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무력 불사용,’ ‘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약속하고, ‘불가침의 경계선’을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군사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문제도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평화협정에 담아야 할 내용의 대강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 폐기 및 교체에 따르는 구체적 대안은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전쟁의 원인과 책임 규명, 이에 따른 배상과 보상, 전범처리 및 사면 문제 등이 평화협정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평화협정이 한반도 영구분단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단초이자 연결점이라는 점이 부각되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남북문제는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라는 점” 따라서 “주권과 국경 및 내정 불간섭 등 국가승인의 의미를 갖는 용어의 사용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의 내용은 단순히 전쟁을 상태의 종식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의지를 확인하고 평화를 관리하는 조치들을 망라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화체제는 군비통제 조치를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담보하는 군비통제의 전략

군비통제와 관련 통상적인 순서로서 ‘정치적 신뢰구축 - 군사적 신뢰구축 - 군축’의 과정이 제시된다. 이러한 전통적 접근방법이 논리적 설득력을 일정하게 확보하고 있지만, 하나의 단계가 다른 단계의 선결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SALT, ABM 조약 등 냉전기 미소가 이루어냈던 군비통제 조치들은 양자 간의 정치적 신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할 만한 검증의 절차와 기술에 기초한 것이다. 군비통제의 과정은 신축적으로 합의되고 운용될 필요가 있다.

한반도 군축은 평화체제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이지만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촉진/보장 기제를 동반해야 한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의 제도화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안보의 불안정으로 인해 이 지역 국가들이 군비증강과 군 현대화 작업을 지속한다면 남북한만의 군축은 통일된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공동/협력적 안보 개념에 기초한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의 제도화는 동북아의 안정을 도모하여 한반도 군축의 분위기를 조성/유지하는 중요한 촉진제가 될 것이다. 6자회담으로부터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별도의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은 회담 진전 여부에 따라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가 더디게 발전하더라도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군축은 합리적 수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 후 한반도의 안보와 관련 군축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선결과제이며, 또 군축이 무장해제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나아가 통일 후 필요한 경우 자위수단을 확보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체계적 평가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하면 될 것이다. 한국의 무기수입대체 노력을 통한 민군겸용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군축 노력을 안전하게 확보해주는 합리적 기제가 될 것이다.

군축의 이행은 남북한 정부의 의지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이에 기생하는 국내 기득권 세력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군축은 남한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는 미 군산복합체에게는 다대한 손실을 의미함으로 미국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국내정치적 함의”를 가질 뿐 아니라, 세계무기 시장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통한 세계적인 개입 능력 제고에도 차질을 가지고 올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설사 남북간 정치 군사적 신뢰가 구축된다 해도 상응하는 유인제(incentives)가 결여될 경우 미국으로서는 군축을 가능한 한 지연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불필요한 군축 지연을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무기수입선 다변화 나아가 수입대체를 추진해야 한다. 미국은 유사시 부품 공급의 필요성 등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

조하고 있지만, 여러 무기체제를 혼용하고 있는 대만이나 이스라엘이 작전 수립/실행에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이 과장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을 말해준다. 수입대체는 단기적으로 군축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뿐 아니라, 민군겸용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무력의 공급조절을 한국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점을 제공한다. 즉 군축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유사시 방어력으로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담보한다는 면에서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현재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이 사상 최저 수준이라 할 때 회임기간이 긴 무기수입대체 노력을 기울일 적기라 하겠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주한미군

미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될 경우 주한미군의 장래 문제가 공식 거론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으로 한미간의 문제라는 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실질적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통제 문제가 토로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수준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변동할 것이지만 이는 한반도 군축과 맞물려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한미군의 성격도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주한미군이 평화유지군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한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동맹”으로 설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를 의미하는 바, 한미 관계의 악화와 그에 따른 남한의 국내정치의 동요 등은 가까운 장래에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의 성격을 “재해석” 하는 방법으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갈 수 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양국간 군사원조의 대상으로 “공동의 위험 common danger”을 적시하고 있을 뿐 북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상 북한의 재침방지를 보장하던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을 다른 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주한미군의 성격이 재해석되는 경우 주한미군의 감축과 한국군에 대한 작통권 전환은 북한의 안보위협 수준을 낮추며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탄력을 주게 될 것이다. 유사한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통제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결부하는 이유는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는 북한의 오인(誤認)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한반도 전쟁의 가능성이고 이러한 오인의 가능성은 주한미군이 통제되지 않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정치적 함의, 그리고 한국의 전략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북한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점차적으로 체제 개방에 따른 개혁의 과정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 연결을 비롯해 남한과의 교류 협력이 급증하여 남북공영과 민족경제공동체의 형성이 기대될 수 있고, 사실상의 통일의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군축에 따른 한반도에 ‘평화배당금’이 발생하여 안정과 평화

공존의 기반이 공고해질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지역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대미, 대러시아, 대일 전략상 지정학적 핵심 요충국인 북한”을 포함 한반도 전역이 미국의 영향 하에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 극히 우려하고 있는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관계정상화에 따른 북한의 미국 질서에의 편입은 중국을 긴장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보다 더 중요한 사안으로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가 가지는 전략적 함의이다. 미국은 북한의 대량과괴무기를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 후, 그리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한 후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지속할 명분을 잃게 된다. 현재에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가 사실상 중국용이라 할 때 북한위협 소멸로 인해 결국 명실공히 대중국 미사일방어체계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물론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거나 정치적 지형이 변하여 미사일방어체계가 용도변경이나 폐기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고, 이 경우 미중간 긴장이 격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중간 경제협력이나 대테러협력의 중요성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 전환을 추동할 개연성도 낮지 않다. 그러나 “절대 안보”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인식되는 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정치적 심리 효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일본 대만 남한을 군사적으로 연결하는 전략 고리로서의 역할과 그 효과,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일당 독재 체제”의 중국의 급부상이 “보수화된 미국인들”에 대해 가지는 위협 증폭 효과, 그리고 미사일방어체계를 수단으로 중국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노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싸고 미중관계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북미관계정상화는 북일관계의 정상화를 동반하게 되어 일본 지원에 의한 북한의 개혁 개방이 탄력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교차승인의 완성으로 동북아는 정상적인 국제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특히 북일관계가 안정되어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불안정성을 감소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지역안정을 증대시키는 효과와 함께 불안정 요인을 동시에 가지는 것과 비슷하게, 평화체제가 구축된 한반도의 일부가 영토나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민족주의적 충돌을 벌이는 경우 남과 북이 조직적으로 공조하고, 중국이 여기에 결부되며, 또 평화체제로 인해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화하거나 남한의 대미 자율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이 결속하여 동북아 지역에 냉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상기한 미중관계의 불안정성 증가나 동북아지역내 새로운 전선의 형성은 안정과 공영속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한이나 북한 모두에게 득보다는 실이 된다. 따라서 남한은 이러한 가능성을 제어하고 안정과 평화를 촉진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동북아균형자론’은 분별력있게 구체화되는 경우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동북아균형자론은 한국이 한미동맹에 입각해서 중국과 일본 간의 경쟁을 완화하여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와 그에 따른 인식론적 틀은 국제정치의 현

실을 부분적으로만 반영하고 있어 현실성을 상당 부분 결여하고 있다. 동북아균형론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일동맹의 견결성이다. 미일동맹은 한국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미국은 민주 공화 양당 공히 “세계는 아시아에 달려있고, 아시아는 일본 및 미일동맹에 달려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경제 군사적 능력과 함께 가치의 공유가 중요한 이유이다. 일본도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은 미일동맹의 강화뿐이라는 공감대가 주류 외교안보 씨클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북아균형자론은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본을 배제하는 맥락에서 중국과 한국에 동조할 수 있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는 미국의 가치, 득실구조,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를 연장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국제정세에 적용해보자. 한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지지하는 경우 미국과 일본 간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본부터 재고해야 하는 어려운 결단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지지하는 경우 한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신냉전구도가 형성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균형자론은 한국의 사활적 이익에 배치되는 결과를 산출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상정하는 ‘동북아균형자론’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유지, 그리고 지역안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균형이라는 개념을 재정립하고 재확인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사실 균형이라는 용어가 갖는 한국적 의미는 그의 서양식 직역(直譯)인 밸런스와는 큰 거리를 갖고 있다. 한국적 의미에서의 균형은 안정(stability), 정의(justice), 순리(harmony)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중용(中庸) 성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침략의 역사가 없고 또 현재 동북아 각국과 모두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매력을 보태면 한국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균형자라기보다는 동북아의 평화와 정의를 목표로 새로운 지식과 비전을 창출하고 주도하는 중용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의미에서의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각국에 대한 한국의 제안과 주도가 설득력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과거처럼 종속적 역할을 계속 자임하는 경우 또는 전통적 동맹국으로서 탄력없는 추수(追隨)로 일관할 경우 한국의 지적 균형자로서의 역할은 크게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성숙한 관계를 설정하여 자율성을 한도 내에서 극대화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창조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또 한미동맹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계의 발전과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FTA 주요 협상결과 총평 ³⁾

이해영(한신대 교수)

1. 상품관세철폐

<표1>한미FTA 관세철폐에 따른 손익비교 (단위 억불)

	한국의 대미수출	미국의 대한수출	수지	비고
	413	306	+ 108	2005년
실행관세율	3.7%	11.2%		WTO 2004년기준
관세철폐율100%	15.3	34.2	-18.9	
80%	12.2	27.4	-15.2	

- 0 한미간 관세율의 차이(3.7% 대 11.2%)는 FTA효과를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
- 0 위 표에서 보듯 관세를 동시에 100% 즉시 철폐할 경우 2005년 기준 한국이 15.3억불, 미국이 34.2억불 즉 미국이 2배 이상의 추가이익을 거두게 됨. 철폐폭이 클수록, 그 기한이 빠를수록 미국이 더 많은 실익을 거두는 구조.
- 0 GDP규모로 볼 때 미국이 16배 이상이나 관세는 GDP가 아니라 수입액에 부과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사정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님
- 0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대미 무역 흑자의 감소는 불가피. 단지 그 폭이 문제가 됨. 대미 무역적자국의 가능성에 예의 주시할 필요 있음
- 0 감소한 대미무역흑자폭만큼 대 세계무역, 즉 일본, 중국, EU등에서 FTA로 인한 무역전환(trade diversion)효과(예컨대 수입선 변경)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수출의존도가 특히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0 현재 한국의 대미 기술력 수준은 약70%. 제조업 모든 분야가 한미FTA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님. 기계, 정밀화학, 석유화학 등에서 관세율 차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

2. 한미 FTA 자동차협상의 대차대조⁴⁾

1. 일방적인 퍼주기가 명확함에도 정부측의 환호작약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퍼주기와 환호작약사이의 깊은 간극은 ‘선진화’ 라는 말장난이 매우고 있다. 곧 어차피 경쟁력 강화와 제도 선진화를 위해 고치고자 한 것이니 이는 내 준 것이 아니라는 식이다. 지난 1년 내 불성실한 수박겉핥기 식의 보도로 일관하던 일부 보수 언론은 타결이 되자

3) 협정문이 공개된 후 개교예정. 인용시 필자의 동의를 받아 주시기 바람.

4) 자동차 부분은 오마이뉴스 기고문을 인용함

준비된 온갖 기획기사를 통해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들의 ‘마술피리’ 연주로 온나라가 혼미하다.

정부와 이 들 언론이 일치단결해 잘했다고 칭송하는 분야 가운데 단연 으뜸은 자동차 협상이다. 해서 과연 얼마나 잘 된 협상인지 그 손익을 따져 보자.

2. 아래 표는 한미FTA 자동차 부문의 손익을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으로 가려서 정리한 것이다. 협상의 최종적 평가는 이처럼 각 요인에 대한 이해득실을 찬찬히 그렇지만 면밀히 비교검토해 보았을 때 비로소 가능하리라 본다.

<표>한미 FTA 자동차협상 손익비교

		+ 요인	-요인	비고
관세		.미승용차 2.5%(3,000cc이하 즉시, 3,000cc이상 3년 뒤 철폐) .부품(0-2.5%, 평균1.5%) 즉시철폐* .트럭(픽업)** 관세 25% 10년 뒤 철폐	한국차 관세 즉시철폐(8%)	*즉시철폐시 연 8.6억불 수출증대 효과(산업연구원) **현재 생산하지 않음
비관세	세제		배기량기준세제(세수 총4조) . 특소세, 자동차세 개편 4,000억 세수 감소* . 새로운 배기량기준세제부과 금지 . 한국정부, 신차구입시 지하철공채/지역개발공채(현재 연1조 규모)관련 공채 할인을 공표해야**	*조세연구원 **한국정부발표에는 누락 .세수 감소(주행세 등으로 보전)
	환경		.자동차배출가스기준(K-ULEV) 관련 “캘리포니아주 평균배출량제도” 도입* .승용차배출가스 측정장치(OBD)장착 유예(2008년 말까지)	*제작사가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배출량 평균이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적용을 허용
	안전		. 수입차에 대한 자기인증 유예(2008년 말까지)	
	기술		.새로운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도입 금지	
특별 신속분쟁해결절차		.자동차관련 양허위반시, 기대이의 무효화 및 철폐시 6개월내 특별신속분쟁해결절차 도입(스냅백)*		*USTR, ‘전례없다’고 자평
자동차표준 실무작업반		“조기경보체제”*		*한국, 신규 규제 시 즉시 통보
현지생산	빅3 한국 기진출(GM, 포드, 크라이슬러)	. 현지생산비율*(현재 22%, 3년 뒤 67%)** . 2.5% 관세 즉시철폐 효과 대폭 감소		*현대기아차 현지 생산 총 60만대 규모 **3.20 바티야 USTR부대표 의 회증언
환율		-원/달러 환율 960원시 약7,000억 영업이익 감소 - “원/달러 환율10%하락시 자동차 가격경쟁력 4.24%하락”(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5%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승폭을 압도함

		-최대피해업종이 자동차	
우회수입	GM대우 대미 수출증가	우회수입으로 인한 내수잠식 .미국산 독일차*, 일본차**	*미국산BMW, 벤츠등 ** 중장기 진출 전망
기술개발	신기술도입*	기술종속(엔진부품, 변속기등)	*자동차관련 대미 기술력 수준 약 90%
구조조정	구조조정효과	고용악화	

(1) 3000cc이하 승용차의 관세 2.5% 즉시철폐는 미국이 처음 15년 뒤 철폐를 요구했었다는 점에 비추어 사실 의외에 가까운 것이었다. 산업연구원은 작년 승용차 및 부품 관세가 철폐될 경우,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연8.6억불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 전체 협상의 구도로 볼 때, 관세 2.5%의 즉시철폐는 한국의 각종 비관세장벽 철폐와 교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연 여기서 예컨대 라벨링법과 같은 미국의 자동차관련 비관세장벽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알려진 바 80여개에 달하는 세제, 환경, 안전, 기술표준과 관련된 광범위한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무너졌다고 보면 되겠다. 협상과정에서 자동차 할부금융, 모터쇼, 수입차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까지도 언급되었다고 한다.

먼저 세제를 보면 배기량기준세제(세수 총4조)와 관련, 특소세 50%이하, 지방세로서 지방재정의 17%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과세구간 개편으로 약4,000억원의 세수손실이 예정되어 있다. 또 한국정부는 신차구입시 지하철공채, 지역개발공채(현재 연1조 규모)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공표해야 하고, 새로운 배기량기준세제부과는 금지된다. 배기량 기준 세제가 기본적으로 직접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 데 비해, 부족한 세수는 주행세등 간접세를 통해 보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3) 미국차에 대한 환경, 안전기준 역시 대폭 완화되었다. 먼저 여기서 2006년 미국차의 수입량이 5,025대(1억4백만불)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환경기준중 배출가스기준을 보자. 정부는 소규모 제작사(연간 판매량 1만대 이하)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2009년부터 기존보다 2배 가량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이 번 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미 캘리포니아 평균배출량 제도(FAS) 기준을 도입, 이를 사실상 유보하였다. ①. 정부는 배출가스 중 하나인 NMOG(비메탄계 유기가스)를 기준으로 당초 수입차에 대해 배출 허용 기준을 0.047 g/km에서 0.025 g/km로 강화할 방침이었으나, 연간 판매량 4천500대 미만 수입사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에도 0.047 g/km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② 4천500~1만대 미만 수입사에 대해선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0.037 g/km로 적용, 당초 방침의 절반 가량 강화된 수준에서 유지해 주기로 했다. 그 결과 국내 자동차사들은 기존 방침대로 강화된 수준의 배출 허용가스 기준을 적용받게 돼 정부 스스로 국내 환경 문제를 방치하고 역차별을 유발한 셈이다. 또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부착 의무 규정에 대해서도 한국내 연간 10,000대 이하 판매 수입차는 국내사와 달리 2008년 말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안전기준(자기인증) 역시 수입차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이 유예되었다. 제작사별

6,500대 이하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차에 대해서는 미국기준 충족시 한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 즉 ‘수입차에 대한 편견(anti-import bias)’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세제와는 달리, 환경, 안전, 기술 표준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은 당장 계량화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로인해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초래됨은 자명하다.

- (4) 그런데 미국차에 대한 특혜와 국내차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대해 정부측의 설명을 보자. “▶ 표준 제도(안전기준, 환경기준) 변경의 영향은 미미
 - 환경(배출가스기준)의 경우 제도 선진화의 효과” (<국정브리핑>, 4월 4일자) 즉 배출가스기준 강화를 선진화라고 말하던 정부가 이제 미국차에 대해 배출가스기준을 완화한 것을 두고 ‘제도 선진화’라고 말하고 있다. 후진화가 선진화로 둔갑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미FTA 환경챕터를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한미양국은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할 목적으로 환경보호수준을 저하’할 수 없다고 합의하였다. 하지만 자동차 배출가스관련 한미 합의는 자동차 무역을 증진할 목적으로 사실상 기 환경기준을 완화한 것이기 때문에 상충이 불가피하다. 한미FTA가 한미FTA를 부정하는 꼴이다.
- (5) 수익률로 볼 때 3000cc이상이 5%인데 비해, 3000cc이하의 경우 1%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3000cc이하 자동차에 대해 2.5%관세가 즉시철폐될 경우 일정한 수익률의 개선이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차의 경우 미국현지 생산라인은 소나타급이고 최근 현지생산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 2005년 현대차의 수출이 33만대에서 2006년 24만대로 급증하고, 이에 반비례해서 미국현지 생산량은 8.7만대에서 22만대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자동차 북미 수출 및 현지 생산판매 실적> (단위:천대)

	수출(국내 생산)			미국공장(HMMA) 생산 판매			북미판매합계 (국내+ 현지 생산)
	미국	캐나다	북미	내수	수출	합계	
2005	328	59	387	87	4	91	478
2006	240	49	289	215	21	236	525
증감	-26.8%	-16.8%	-25.2%	147.1%	425.0%	159.3%	9.8%

미국측 협상대표인 바티아의 의회증언에서 말했듯이 3년 뒤면 한국차의 현지생산비율이 67%에 달하게 된다. 이말은 4-5년 뒤 3000cc이하 즉 소나타급의 현 수출물량이 거의 현지생산으로 대체될 때, 관세2.5% 철폐를 통한 기대이익이 대부분 소멸됨을 의미한다. 또 부품의 경우에도 부품회사가 이미 미국현지에서 동반진출하고 있고, 소나타의 부품 현지조달비율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품관세 평균1.5%의 철폐 효과 역시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6) 작년 협상초기부터 미USTR측은 자동차관련 ‘전례가 없는’ ‘강력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바티아 부대표 역시 최근 의회증언에서 “유일하고, 전례없는, 강력한” 제도의 도입이라는 말을 되풀이 한 바 있다. 바로 그 ‘전례가 없는’ 이 새로운 제도가 자동차 부문에 ‘특별 신속분쟁해결절차’의 도입이다. 대개 통상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쟁해결절차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한미 FTA에서도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메카니즘을 두고 있고, 투자챕터에는 저 유명한 독소조항인 ‘투자자-정부소송제(ISD)’를 두고 있고, 노동, 환경챕터에는 또 별도의 분쟁해결메카니즘을 두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덤핑관련 분쟁의 경우 각국은 덤핑마진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ISD나 노동, 환경관련 분쟁에서는 배상금이나 과징금 부과등과 같은 구제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런데 한미FTA 자동차부문에서 양국이 합의한 특별 신속분쟁해결절차는 이를 훨씬 넘어선다. ‘자동차 관련 양허 위반시 또는 기대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시’ 경우에 따라 2.5% 관세철폐를 회수할 수 있다는 ‘스냅백’ 조항이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에 관한한 이 경우 자유무역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물론 정부측은 스냅백 조항이 ‘협정문이행의 안전핀’으로서 ‘심각한 위반’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듯이 설명하지만, 미USTR이 발표한 내용에는 ‘기대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nullification/impairment of expected benefits)’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비위반제소’의 발동요건에 해당되는 이 조건은 그 개념 자체가 애매하다는 점에서 오남용의 여지는 피할 길이 없다.

그리고 자동차부문 협상이 미국의 관세 대 한국의 비관세의 맞교환이라 할 때, 협정위반의 소지는 수많은 비관세장벽이 양허된 한국측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러한 한국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합의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관세2.5% 즉시철폐라는 가시적 성과에 과도하게 집착한 한국 협상단의 책임이다.

물론 알려진 바로 한국 역시 자동차관련 신속분쟁해결절차 특히 스냅백(‘full snapback’) 조항에 대해 처음엔 반대하였고, 또 3월 30일 연장협상기간 동안 스냅백의 규모를 25%정도로 줄이고자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위험성과 비대칭성은 사전에 인지되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또 하나의 독소조항이자 자동차부문의 ISD라 불릴만한 스냅백조항에 따른 과잉제제문제는 향후 두고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7) 자동차관련해서는 미의회의 입장이 중요하다. 미의회는 지난 3월초 이른바 <한국 자동차 시장 개방을 위한 초당적 의회안> 즉 1) 미국 수입관세 2.5%의 철폐와 한국내 수입차의 시장점유율(OECD 평균, 20%)를 연계하고 2)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철저히 제거하자는 매우 포괄적인 제안을 한 바 있다. 또 이 의회안의 관철을 위해 미 민주당 수뇌부가 총동원되어 부시와 USTR에 전방위 압박을 가한 바 있다. 따라서 이와 비교해 협상결과는 의회의 입장에서 매우 미흡한 분야이며, . 향후 미의회가 재협상을 들고 나온다면 그 중 자동차부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8) 2005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10%하락시 자동차 가격경쟁력 4.24%하락”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그 절반인 5%가 하락해도 자동차 가격 경쟁력은 약 2.1%하락, 2.5% 관세철폐의 효과를 거의 잠식할 수준이다. 또 원/

달러 환율이 960원시 현대기아차의 경우 약 7,000억 영업이익 감소한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말미암아 사실상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차단된 현 조건에서 보자면 2.5% 관세철폐 효과는 그만큼 취약한 미래성과 같은 것일 수 있다.

(9) 미국산 독일차나 일본차의 경우 자동차 원산지규정상의 현지조달 부품비율 50%수준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차로 분류된다. GM대우의 경우 미국으로의 우회수출로 일정한 기대이익이 예상되지만, 실제로 위협적인 것은 미국산 독일차나 일본차의 우회수입이라고 볼 수 있다. 2006년 10월 현재 수입차의 국내시장점유율은 4.22%(신규등록 780,984대중 32,963대)로 국별로 보면 미국 0.58%, EU 2.42%, 일본 1.13%, 기타 0.10%이다. 그래서 현재의 조건으로만 보더라도 한미FTA의 결과 내수시장의 상당 잠식은 불가피하다. 우려되는 것은 내수잠식으로 인한 경영위기와 이로 인한 구조조정 압박이 현저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10) 정부 스스로 가장 잘 했다고 하는 자동차 협상은 그 진상을 볼 때, 잘해야 '본전'인 협상, 아니면 오히려 손해이다. 즉 관세 2.5% 즉시 철폐의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다 할 수 없으나, 현지생산증가, 우회수입(내수감소), 환율불안, 비관세부문(세제, 환경, 안전, 기술 등)과 스냅백조항등의 요인으로 그 효과는 대부분 상쇄, 소진되고 있다.

3. 개성공단⁵⁾

0 자동차와 더불어 협상의 최대성파로 과대포장 광고되는 부문

0 협상 결과

1. “개성공단관련, 역외가공지역(OPZ)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
2. “양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에 OPZ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 채택

*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 노동기준 및 관행등”

3. “협정발효후 동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통해 개성공단 또는 여타 지역을 OPZ로 선정 가능”

0 그러나 상당한 문제점이 노정됨

(1) 단적으로 말해 협정문에 ‘개성공단’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가. 혹 있다면 협정문 본문인지, 부속서인지, 비공개 부속합의서(side letter)인지가 궁금하다. 주의에 탐문하니, 없다고 한다. 이 정황을 정부는 ‘개성공단이라는 표현을 삽입하지 않고도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그래서 이 조항이 더욱 의미있다는 그런 조의 설명이란다. 허나 한미FTA는 조약이고, 국가간의 계약이다. 계약서에 계약의 대상을 명기하지 않는 것은 예컨대 전세계약서에 번지수를 기입하지 않는 것과

5) 이 부분은 <오마이뉴스> 2007년 4월 5일자에 기고한 글을 요약

마찬가지가 아닐까. 물론 개성공단이 양국간 초민감품목가운데 하나이고, 하이폴리티컬한 사안이라 손치더라도, 협정문을 구성하는 비공개 부속합의서에 조차 이것이 명기되지 않았다면 매우 심각하다.

(2) ‘악마’는 요건(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할 때, 한반도OPZ위원회의 요건으로 들고 있는 ‘노동기준 및 관행’이 문제가 됨. 심중팔구 미민주당을 의식한 기준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북한은 스스로를 공산주의 사회 즉 계급없는 사회로 이해한다. 그래서 자본가가 있을리 만무하고, 착취가 있을 수도 없다. 한미FTA협정문의 다른 부분 즉 노동챕터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강하게 반영하여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가 인용되고 있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노동기준이란 ILO기준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그 기준의 핵심이 노동3권이고 특히 단체행동권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자본가의 존재를 전제하고, 이에 맞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계급없는 사회’인 북한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적어도 체제교체를 상정하지 않고서 말이다.

이 합의가 알려지자 말자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 김원웅의원은 개성공단을 가리켜 “한국기업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자가 결합된 형태”라는 촌평을 가한바 있다. 그렇다면 OPZ내 북한 노동자들은 남한의 자본가를 대상으로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주장해야 할 것인가. 북한은 그렇다면 OPZ만을 위한 노동 특별법이라도 만들라는 말인가.

(3) 더욱 가관인 것은 한덕수 총리의 해석이다. 개성공단과 관련 한총리는 “한반도를 우리의 영토로 한다는 헌법조항과 일치하는 개념을 집어넣었다”고 했다. 우리 헌법에 나오는 영토조항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단을 인용한 것이다. 북한이 우리 ‘영토’라는 이 황당무계하고, 냉전적인 사고는 남북한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총리로서 아주 부적절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생각은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하다. 한미간 합의안에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 협정발효 1년후 개최”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한총리의 말에 따르면 북한은 헌법에 따라 우리 영토임에 분명한데, 왜 미국공무원이 우리 영토내 사안과 관련된 위원회를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굳이 주권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생똥맞기는 매일반이다.

(4) 한반도OPZ와 관련 아무래도 가장 심각한 요건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6자회담에서 신물나게 보듯이 ‘비핵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북한 다르고 미국 다르고 또 우리 다르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그 자체가 고도로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첫째,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 제기하는 ‘비핵지대화’ 개념은 그 범위를 남한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내의 핵무기와 특히 미국의 핵우산 제공금지를 다 포함한다. 당연히 여기에는 당연히 미 핵항모나 핵잠수함의 한반도 영해 기항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있다. 반면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란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그래서 이른바 핵폐기라 하더라도 그 함의는 전혀 다르다. 북한이 폐기대상으로 삼는 것은 ‘핵무기 및 핵무기 계획’인 반면, 미국은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즉 이른바 평화적 핵이용까지를 다 포함하는 훨씬 광범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한반도OPZ의 단서조항인 ‘한반도 비핵화’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확실한 한 가지는 북한이 말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했으니 만큼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 즉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철폐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FTA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는 개성공단 합의는 사실 6자회담이후 조성된 북미간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스스로 역행하는 그래서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할지 모른다.

0 사실 개성공단 이슈는 노대통령 스스로 언급했듯이, 범여권의 한축을 친FTA블록으로 분할 견인해 내는 정치적 효과를 지닌다. 나아가 북미긴장완화 국면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상징적 아이콘으로 개성을 배치하고, 혹 있을지 모르는 남북정상회담을 여기에 엮어 6자회담-개성-정상회담이라는 환상의 트라이앵글로 집권후반기를 화려하게 마무리짓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의 체제교체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한반도OPZ의 전제조건들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성격이 다른 한미관계에 과도하게 결박시켜 미국의 대북, 대아시아전략의 하위종속변수로, 즉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다시 말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짐이 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라면 개성공단은 한미FTA에서 차라리 빼는 것이 옳다.

4. 투자자-정부 중재제도(ISD)

0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문으로 정부측에서 마찬가지로 잘 된 협상으로 평가하는 분야

0 그러나 처음 정부안의 핵심이 수용을 ISD에서 배제하고 이를 국내구제절차로 대신하는 것이었다고 할 때, 완전히 실패한 협상. 아래에서 논하는 투자챕터의 거의 모든 쟁점들이 미국요구가 관철되고, 오직 간접수용에 대한 부속서(Annex) 4조의 예외조항에 부동산, 조세를 포함시키는 여부로 쟁점이 축소, 왜곡됨

0 투자챕터상의 중요 쟁점

(1) 한미FTA 투자챕터 협상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2004년 양자간투자협정 표준안(BIT 2004)를 기본텍스트로 진행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한미 양국은 IMF이후 오랜 기간 한미투자협정 협상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때의 표준안이 미국의 1994년 투자협정 표준안(BIT 1994)이었다. 이후 미의회는 BIT1994를 대폭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그 범위와 내용을 대폭 확장, 체계화해서 새로이 내놓은 것이 BIT 2004라 할 수 있는데, 이 번 한미FTA에서는 그것이 기본텍스트로 된 것이다. 미국의 표준안은 단지 미국의 표준안이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 즉 미국 업계의 요구와 미국의 국익을 고려해서 작성된 표준안이 어느 순간 ‘우리의’ 표준안으로 된 것이다. 특히 미국 표준안은 투자와 투기의 구분이 불가능할 수준까지 투자의 범위를 매우 넓게 정의한다. 여기에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포함, 사채를 비롯한 채권, 지적 재산권 등이 다 포함된다. 2005년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거둬들인 평가차익이 82조 즉 대략 820억 달러에 달하고,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가운데 50.8% (2005년)가 미국계인 현실에서 지나치게 넓은 투자정의로부터 누가 이익을 향유할지는 이미 자명하다. FTA의 본질이 체약당사국만의 이익을 위한 계약에 불과하다 할 때, 그 협정의 조문과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투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관련 이미 수많은 모델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국내법에 정한’ 범위에서만 외국인 투자를 투자로 인정하고, 덴마크-폴란드 투자협정의 경우 포트폴리오투자는 배제하거나 장기 포트폴리오투자만 투자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최소금액을 정해 그 이하 액수는 투자정의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한미 FTA 협상에서도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살펴 투자의 정의를 엄밀히 하는 것이 옳다. 최소한 ‘투기자본’ 만은 투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2)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서비스, 정부조달, 환경법등에서 주정부에 대한 ‘포괄적 유보’ 를 요청하고 있다. 2005년 전북도의회 급식조례의 WTO협정 위반 판결에서 보듯, 우리의 경우 공기업은 물론이고 지자체 역시 WTO를 비롯한 국제통상협정, 특히 FTA의 적용대상이 된다. 반면 미국은 연방국가의 특성을 들어 주정부를 이로부터 예외로 하자고 주장한다. 누가 보아도 이는 불평등한 조항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투자자대우에 관해서도 주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때, 한국 투자자는 대미 투자시 내국민 대우가 아니라 내주민 대우를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와 투자분야의 유보안이 같이 작성된다고 할 때, 미국이 요구하는 주정부에 대한 포괄적 유보가 투자분야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백히 해야 한다.

(3) 수용에 보상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수용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즉 ‘간접수용’ 에 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의하기가 매우 애매하다. 여기에는 대개 기업의 강제적 주식매각, 경영간섭, 정부에 의한 경영진 임용, 자의적이거나 과도한 조세부과가 해당된다. 현재 한미FTA협상에서는 BIT 2004의 ‘간접수용’ 부속서를 수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미부속서에 따르면 간접수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1)정부조치의 경제적 영향 2)정부조치가 투자의 기대이익에 개입한 범위 3)정부조치의 성격 등을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심의(inquiry)’ 를 요청하고 있다. 3년동안 4조5천억이라는 평가차익을 거둔 론스타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의회, 미행정부, 미무역대표부등에 전방위적 로비를 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론스타는 투자챕터를 근거로 어떤 형태로든 한국정부를 제소할 전망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국제청의 과세조치의 ‘경제적 영향’, 론스타의 투자 기대이익에 개입한 범위, 그 성격 등을 ‘심의’ 해서 그것이 론스타에 대한 ‘간접수용’ 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4)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론스타는 국내법원 아니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에 제소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국내구제절차에 대한 신뢰부족을 들어 국제중재를 론스타가 선택할 것은 거의 자명하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국내법원의 재판관할권은 사실상 공동화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표준안에 들어 있는 투자자-정부제소권의 수용여부가 문제가 된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NAFTA이후 이 사안은 국제시민사회의 격렬한 논란 거리였고 1990년 후반 다자간투자협

정(MAI)가 실패하는데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국내에서의 비판여론에 대해 정부측은 여러 자리에서 이것이 우리가 체결한 여타 FTA나 투자협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임을 들어 별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미FTA협상과정에서 우리측은 수용관련 투자분쟁의 국제중재절차 배제를 미측에 제시했다고 한다. 또한 제소대상 범위에 있어서도 협정의무뿐만 아니라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투자계약, 투자인가 위반도 제외하겠다고 한다. 물론 그 자체로 정부측 안은 단지 수용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투자 분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자체로 놀라운 정부측의 입장선회와 관련해 향후 어떻게 이를 합리화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투자분쟁해결절차와 관련 미국은 이미 미-호주FTA에서 국제중재절차 대신 양국간의 '중재패널'을 통한 분쟁해결에 합의한 선례가 있지만, 그 외의 경우 거의 예외없이 투자분쟁의 국제중재절차 즉 ICSID회부를 관철해 왔다.

(5) 투자채터의 이행의무부과 금지조항은 이미 스크린쿼터를 통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안이다. 미국의 요구는 이제 스크린쿼터 절반 축소를 확실히 굳히고, 신문, 방송부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 역시 최대한의 유보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든가, 이행의무 부과 금지대상을 분명히 열거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0 한미FTA로 인해 FDI가 늘어 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

<표3> 한미 투자 현황(단위: 백만 달러)

	한국의 대미투자		미국의 대한투자	
	FDI*	FPI*	FDI*	FPI*
2001	1,863(1,461) ¹	3,764	3,886	34,475
2002	1,409(568)	5,697	4,491	39,573
2003	780(1,051)	7,961	1,242	53,429
2004	1,420(1,338)	12,733	4,718	73,613
2005	1,404(1,240)		2,690	
누계	18,556(14,972) ²		34,936 ³	

출처: 수출입은행, 산업자원부, IMF등에서 재구성

주: * FDI는 저장(貯量, stock), FPI는 유량(流量, flow)을 의미함

¹ ()는 실제도착기준, ² 누계는 1980-2005년 수치, ³ 누계는 1962-2005년 수치

- 2004년을 FDI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14억달러, 반면 미국의 그것은 47억달러로 약 3배의 차이를 보인다. 같은 년도 FPI를 보면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736억달러, 한국의 그것은 127억달러로 약 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IMF 이후 미국의 대한 투자가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전환되어 매년 급증세를 보여왔다. 포트폴리오투자의 유형을 보더라도 2003년 534억달러 가운데 주식이 491억달러, 장, 단기채권 투자는 약 43억달러에 불과 미국의 대한투자는 포트폴리오 그중 주식투자가 압도적임을 알 수 가 있다. 반면 같은 해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 투자 79억달러 가운데 주식투자는 9억6천만달러, 장기채권은 67억달러로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 투자는 거의 채권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한미간의 투자 현황이 매우 불균형한 상태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즉 우선 양적으로 미국의 대한 투자총액이 한국의 그것을 압도하고, 미국의 대한 FPI는 압도적으로 주식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대미 FPI는 주로 미국의 장기 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미국의 대한 투자가 단기 차익을 노리는 데 반해, 한국의 대미 투자는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는 미국경제의 선순환을 지지하는 장기 안정형이라는 말이다.

0 결국 투자(기)자 과잉보호를 본질로 하는 한미FTA 투자챕터는 (1) 정부가 기대하는 FDI가 아니라 FPI, (2) FDI라 하더라도 그린필드가 아니라 M&A, (3) FPI라 하더라도 채권이 아니라 주식에 집중되는 미국의 대한 투자의 기본적 경향성을 바꾸기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한국경제는 미국계 투자자본의 만성적인 M&A위협에 광범위하게 노출됨.

0 쟁점의 왜소화 속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된 부동산과 조세 역시 심각한 우려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1)부동산: 한국측은 부동산계획(3차 협상), 토지관리및 이용(4차),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5차 이후)로 지속적으로 후퇴. 쟁점의 이중축소가 일어남. 그런데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란 사실 '부동산 가격의 등락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금융 정책'을 의미함. 이런 금융 정책은 크게 두 가지.⁶⁾ (1) 주택 담보인정비율(LTB), 즉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로 내놓는 자산과 대출액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고, (2) 투기과열지역에서의 부동산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것.

(2) 알려진 바로 조세 역시, '조세부과'는 간접수용 예외로 되어 있는 반면, 투자챕터가 아닌 분쟁해결챕터에서 조세조치는 ISD대상으로 남겨 놓고 있다 함. 협정문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시급히 요청됨.

0 결국 정부가 주장하듯 부동산, 조세가 간접수용의 예외대상에서 완전 배제된 것이 아님. 설사 그것이 간접수용의 예외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용의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님.

5. 금융세이프가드

0 금융세이프가드 역시 한미FTA의 성과로 언급됨

0 그러나 문제는 역시 그 조건임. 알려진 바로는 미국은 6개의 전제조건을 제시. 절차의 투명성, 6개월 이내 송금중단조치 해지, 독일과의 투자차별금지(최혜국대우), 차별금지(내국민대우), 주식투자자금 제외, 차입금 차환불가등임. 세이프가드를 사실상 무

6) 이하는 홍기빈의 논의를 참조한 것임(<프레시안> 4월6일자)

력화시키게 될 한미간에 합의된 세이프가드 전제조건에 대한 협정문 확인 또한 긴급히 요청됨.

0 세이프가드 자체는 우리 <외국환거래법 제6조> “천재지변, 전시, 사변, 국내 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동할 수가 있음. 따라서 세이프가드에 대한 ISD가 항구적으로 배제되지 않는한 위 외국환거래법 6조 자체에 따라 취해진 적법하고 정당한 세이프가드 조차 ISD대상이 될 우려가 없어진 것은 아님

0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부문 단기 ‘세이프가드’ 확보를 큰 성과로 내세웠으나, 그 구체적 요건은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에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미국이 못하겠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허용했다” 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픽스(확정)가 안돼 실무 협의로 확정하는 것으로 됐다” 고 밝혔다.(<경향신문> 4월 7일자)

6. 섬유류

0 섬유류류 관세 철폐 61%, 원사기준 원산지 완화품목 5개정도임.

0 처음부터 가장 많은 실익이 예상되었고, 섬유협회에 따르면 관세철폐, 원산지 기준 완화시 2-4억불 정도의 추가이익이 예상. 중저가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대미 수출이 2005년 미국의 섬유쿼터철폐이후 중국에 밀려 지속적인 수출감소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는 가 하는 것이 관건

0 대미 주요 섬유 수출부문인 의류(54%)는 중국산등이 100이라 할 때 180. 한국산 대미 수출품에 대한 평균관세 14%라 할 때 관세 즉시철폐시 약 155의 가격수준.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음

0 그러나 이 보다 심각한 것은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정부협상문건에 따르면 협상 막바지에 더 많은 관세 철폐를 받아 내기 위해 SPS 분과에서 LMO관련 미국요구를 수용했다는 대형 의혹.

- 몬산토, 신젠타등 세계 1,2위의 초국적 농산품기업이 요구해 온 GMO표시제 요건 완화 등과 섬유관세 철폐가 교환되었다면 이는 한미FTA 홍보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국민건강권을 헐값에 넘겼다는 것을 의미

7. 무역구제

0 무역구제야말로 한미FTA의 개성, 쌀과 더불어 "전략적" 목표라는 것은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 왔고 또 상당한 실익이 달린 문제. 15개 정도를 요구하다, 5개로 줄여서 잠시 큰소리를 쳐보기도 했지만, 결국 작년 12월 말로 사실상 실패.

0 정부가 말하는 5개 조항이 설사 관철되었다더라도 그 실익은 없을 것임. 미무역구제법에 의한 수출손실 연15억불중(무역협회) ‘제로잉’ 조항만으로 인한 손실 약86%(13억

불)7), 여기에 ‘일몰제심’, ‘비합산’ 등 핵심조항이 제외됨으로써 기대실익 거의 없음

0 더욱이 수출업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 업계에서 무역구제에 대한 피해는 압도적으로 제로잉과 재심절차에 집중.⁸⁾ 그런데 정부는 제로잉을 우리측 핵심요구에서 제외한 이유와 관련 미국의 제로잉관행이 WTO에 제소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었음.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FTA는 WTO의 예외라는 상식적인 사실과, 나아가 미국의 경우 설사 WTO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1994년 UR/WTO협정의 이행법(URAA 102조)⁹⁾에 따라 WTO판결은 미통상법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전혀 간과. 뿐만 아니라, 만일 정부가 WTO제소를 이유로 제로잉조항을 우리측 요구에서 제외했다면, 2004년 한미쌀협상을 마무리지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한미FTA협상에서도 마찬가지로 WTO/DDA를 이유로 쌀은 처음부터 제외되었어야 함. 정부측이 전혀 설득력없는 논리로 실패한 협상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0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성과라고 말하나, 이것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덤핑 관련 분쟁해결 절차가 별도로 합의되어 있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차피 미통상법 301조 즉 무역구제관련법과의 관계 문제가 다시 문제가 됨. 따라서 실효성이 없음

0 우리 철강업계가 요구해온 WTO상 즉 다자세이프가드 배제는 한국상품이 미국에 주는 피해가 크지 않을 때 ‘재량적’ 배제로 합의함. 그러나 정부스스로 작년 8월 국회 통외통위 보고자료에서 “글로벌 SG 적용배제 조항은 NAFTA성과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멕시코, 싱가포르 배제되는 상황에서 우리만 적용배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국내 설득이 곤란” (통상하다고 말하면서 결국 실패

8. 농업

0 농업, 사상 최대 규모의 개방. 쌀을 제외한 농산품의 경우 피해액규모는 관세 즉시 철폐시 2.3억불. <농촌경제연구원>자료에 기초해 볼 때 실제 피해규모는 10억불 내외가 될 듯.

0 결국 ‘쌀만’ 지킨 꼴. 그러나 쌀의 경우 2004년 WTO/DDA차원의 한미쌀협상 결과 2014년부터 개방. 이로써 한국 농산품 가운데 미개방 예외품목은 사실상 전무. 따라서 쌀만은 지켰다고 정부가 말한 다면 그것 자체로 매우 부도덕한 행위

0 특히 쌀에 대한 HS code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 “정부는 또 협상 타결

7) Lindsey,B/ D.Ikensen(2002), "Anti-Dumping 101:The Devilish Details of 'Unfair Trade' Law." *Trade Policy Analysis Paper*, Cato Institute, 강문성,박순찬, 이창수 (2002),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쟁점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60쪽 재인용. Lindsey/Ikenson은 미상무성이 플러스 덤핑마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마이너스 덤핑마진을 제외하는 제로잉 계산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을 경우, 덤핑마진이 약86%이상 감소할 수 있음을 미상무성 덤핑마진 계산 프로그램과 동일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밝히고 있다.

8) 위의 책, 62쪽.

9) “UR협정의 어느 규정이나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미국법에 상충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URAA 102조)

직후 ‘쌀시장을 지켰다’ 는 점을 강조했다지만, 사흘 후 **배중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김밥용 찌쌀의 경우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현행 50% 관세를 10년에 걸쳐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향신문> 4월 7일자)

0 기타 별도의 미국이 의무수입물량을 요구했는지, 국영무역상 수입부과금(마크업) 철폐 여부 역시 확인이 필요한 대목

9. 쇠고기

0 쌀 수입규모가 200억인데 비해, 쇠고기는 8,000억규모(2003년). 한미FTA 최대 이권 가운데 하나임.

0 쇠고기 관련 미국의 요구는 처음부터 첫째, 뼈있는(bone-in) 쇠고기 수입재개 둘째, 관세철폐(40%) 셋째, 위생검역완화

0 현재 관세는 15년에 걸쳐 철폐하고, ‘합리적’ 기준에서 사실상 뼈있는 쇠고기 수입재개는 확정적이며 문제는 그 시기 선택. 이를 위해 위생검역 절차를 어떻게 줄이는가의 문제가 남았음.

10. 의약품

0 의약품과 관련 한국은 이미 하기로 되어 있던 약가적정화방안을 작년 말 시범시행

0 핵심쟁점은 약가부문과 지적권부문으로 나누어 짐

- 약가에서 특허신약에 대한 A-7기준 최저가 보장 요구는 지켰다고 하나, 특허신약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식의 단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확인이 필요함

- 독립적인 이의 신청기구등을 인정함으로써 독자적인 약가 결정은 사실상 장애요인

- 지적권분야에서 식약청-특허청 연계, 자료독점권등을 통한 특허연장 효과를 거둠

0 상당한 의약품 소비자피해가 예상됨. 이 경우 국내 소비자의 약가인상등 피해액이 연 1.2억불 - 2.5억불(보건복지부) 혹은 최소 연 7-8억불(보건의료단체연합)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 아울러 국내 제네릭업체의 피해도 예상됨

0 그나마 의약품 분야는 예컨대 강제실시 등에서 보듯 자국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강조하는 미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덕(?)’ 을 본 분야.

11. 전문직 비자쿼터

0 한미FTA 홍보과정에서 자주 등장한 사안

0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별 전문직 쿼터를 보면

캐나다 무제한, 멕시코 5,500명, 싱가포르 5,400명, 호주 10,500명, 칠레 1,400명 수준임

0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규모가 호주보다 3배, 싱가포르보다 2배 수준

0 그러나 한국이 확보한 전문직 쿼터는 0명

0 향후 의회와의 협상에서 호주의 경우처럼 비자쿼터를 받아 오겠다고 하나, 민주당 의회에서 이를 수용할 지는 전혀 다른 문제

12. 서비스 부문 외

0 사실상 미국이 관심을 가진 분야는 서비스, 투자, 지적권, 전자상거래 이른바 신통상 이슈. 실제 미국경제는 상품부문에서 적자이지만, 이 분야에서 세계 최강.

0 서비스무역 원칙으로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할 미래 서비스, 투자관련 업종은 자동 개방되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현행유보 대상인 경우 개방확대 방향으로만 가게 하는 래칫조항 합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 전형적인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도입

0 한미FTA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되어 왔음

0 실제 서비스무역의 절반 가량이 투자의 형태로 일어남. 따라서 투자챕터와 서비스는 매우 밀접한 관계. 투자챕터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서비스부문에 적용됨을 의미.

0 의료, 교육이 유보되었다고 하나, 처음부터 미국의 관심은 경제자유구역내 병원 및 학교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 이미 병원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시행중. 고등교육, 성인교육 그리고 원격교육은 개방

0 영화, 방송분야 개방 확대. 피해 불가피함. 스크린쿼터는 'what if' 항목, 즉 일종의 미끼상품으로 전락되어 현행유보로 확정. 향후 쿼터는 단 하루도 못 늘이는 상황.

0 법률, 회계는 시장 개방. 초국적 초대형 로펌(2,000명이상)등에 의한 M&A우려

0 한미간 서비스무역은 대표적인 적자 부문. 제조업을 비롯한 상품분야에서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적자가 서비스무역에서 발생하는 조건에서 서비스시장의 미국식 원칙과 또 개방은 당연히 서비스무역 적자의 가속화를 촉진할 전망.

- 아래 <표4>에서 보듯 한미간 서비스무역 적자는 IMF직후인 1998년 15억달러에서 2005년 40억달러로 급속히 증가. 그 내역을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여행수지 -32억달러, 특허권등 사용료 -21억달러가 서비스무역 적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지속될 것. 전문직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고, 또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내세웠던 사업서비스 분야는 일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밀려 개방수준이 하향조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적자 기조는 지속, 강화될 전망.

0 지적권분야에서도 50년에서 70년으로의 저작권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서 대폭 양보. 아래 <표4>에서 확인하듯이 지적 재산권은 이른바 '지식 기반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이 분야가 미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WTO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TRIPS)' 협정을 넘어선 'TRIPS 플러스'로 정리됨으로써 향후 한국 지식경제의 대미종속 내지 의존은 불가피.

0 나아가 디지털 콘텐츠를 비롯한 전자상거래도 거의 미국안이 관철.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디지털 콘텐츠분야 협상¹⁰⁾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일부 서비스개념까지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s)'로 인정하게 되면 연간 21조 규모국내시장의 20%가량인 최소 4-5조(40-50억달러)규모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함

10) <한겨레신문> 2006년 10월 26일자

<표4> 대미 서비스무역수지(단위: 백만달러)* 각주11번참조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경상수지	1,256.7	2,681.6	6,616.0	7,818.0	7,273.8	6,970.0	13,770.4	8,410.7
상품및서비스수지	1,637.8	3,790.7	7,052.3	7,878.3	7,006.7	7,161.7	12,236.7	8,310.7
상품수지	3,164.4	5,984.1	9,845.3	10,323.3	10,325.2	10,493.1	15,021.2	12,333.2
수출	23,116.5	30,386.3	38,584.1	32,282.3	32,933.6	35,256.3	44,139.4	43,299.6
수입	19,952.1	24,402.2	28,738.8	21,959.0	22,608.4	24,763.2	29,118.2	30,966.4
서비스수지(전체)	-1,526.6	-2,193.4	-2,793.0	-2,445.0	-3,318.5	-3,331.4	-2,784.5	-4,022.5
수입	8,080.7	8,206.7	9,267.0	9,049.5	8,420.3	9,333.9	11,468.8	12,485.7
지급	9,607.3	10,400.1	12,060.0	11,494.5	11,738.8	12,665.3	14,253.3	16,508.2
운수수지	-793.3	-613.1	25.6	43.3	-124.3	-47.2	949.7	1,229.7
수입	2,677.0	2,898.7	3,569.0	3,698.3	3,551.4	4,065.2	5,164.5	5,535.9
지급	3,470.3	3,511.8	3,543.4	3,655.0	3,675.7	4,112.4	4,214.8	4,306.2
여행수지	311.0	-127.6	-786.7	-846.9	-1,458.5	-1,442.2	-2,319.5	-3,265.2
수입	1,263.7	1,056.5	1,067.5	803.2	763.9	728.1	737.5	810.0
지급	952.7	1,184.1	1,854.2	1,650.1	2,222.4	2,170.3	3,057.0	4,075.2
기타서비스	-1,044.3	-1,452.7	-2,031.9	-1,641.4	-1,735.7	-1,842.0	-1,414.7	-1,987.0
수입	4,140.0	4,251.5	4,630.5	4,548.0	4,105.0	4,540.6	5,566.8	6,139.8
지급	5,184.3	5,704.2	6,662.4	6,189.4	5,840.7	6,382.6	6,981.5	8,126.8
통신서비스수지	-192.4	-39.0	-45.1	-74.5	-54.0	-79.7	-77.4	-84.5
수입	371.9	193.7	172.6	170.5	160.9	130.0	160.5	168.9
지급	564.3	232.7	217.7	245.0	214.9	209.7	237.9	253.4
보험서비스수지	-21.6	12.6	-14.6	-39.6	-73.3	-62.7	-145.6	-329.0
수입	-4.4	9.6	-3.0	3.3	-39.1	-24.1	56.1	25.8
지급	17.2	-3.0	11.6	42.9	34.2	38.6	201.7	354.8
특허권등 사용료수지	-1,295.2	-1,565.4	-1,875.2	-1,231.2	-1,384.2	-1,522.6	-1,743.4	-2,065.3
수입	25.9	40.5	38.0	488.0	323.3	428.3	720.1	741.1
지급	1,321.1	1,605.9	1,913.2	1,719.2	1,707.5	1,950.9	2,463.5	2,806.4
사업서비스수지	174.3	-271.4	-723.0	-963.9	-1,101.3	-1,079.7	-500.6	-878.0
수입	3,036.9	3,168.4	3,420.8	2,802.1	2,396.8	2,708.5	3,084.8	3,229.0
지급	2,862.6	3,439.8	4,143.8	3,766.0	3,498.1	3,788.2	3,585.4	4,107.0
정부서비스수지	415.1	481.3	508.2	603.5	771.0	872.0	945.5	1,191.5
수입	633.3	656.5	669.5	790.6	916.4	1,033.0	1,177.2	1,383.7
지급	218.2	175.2	161.3	187.1	145.4	161.0	231.7	192.2
기타서비스중 여타서비스수지	-124.5	-70.8	117.8	64.3	106.1	30.7	106.8	178.3
수입	76.4	182.8	332.6	293.5	346.7	264.9	368.1	591.3
지급	200.9	253.6	214.8	229.2	240.6	234.2	261.3	413.0

(출처: 한국은행, ECOS에 기초해 필자가 재구성)11)

11) 서비스수지의 각 계정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해설을 참조.

① '운수서비스'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서비스거래로서 여객의 수송, 재화의 수송, 승무원을 포함한 운송수단의 임대, 견인, 도선등 기타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계상한다.

② '여행서비스'에는 여행자인 개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해외체류기간

13. 한미FTA와 통상시스템

0 한미FTA는 한국의 통상시스템에 내장된 심각한 제도결함을 여지없이 드러냄.

(1) 미 주정부의 비합치조치에 대한 포괄적 유보문제. 사실 한미FTA는 미합중국 ‘연방’ 정부와 체결하는 것이지, 주에 대해서는 오로지 주정부 동의하에서만 구속력을 발휘함. 몇 개 주가 한미FTA에 동의할 지 현재로선 알 수 없음. 균형잡힌 협정이 되려면, 사실 우리의 지방정부 역시 선택권 아니 최소한 발언권이라도 보장되어야 함. 이는 예컨대 제주도지사가 감귤만은 살려달라고 미협상단에 애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2) 한미FTA는 우리에게 조약이지만 미국에겐 행정협정일 뿐. 헌법에 규정된 대로 조약인 한미FTA는 국회비준동의이후 국내법과 동등효력을 지님. 반면 미국의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은 미연방법과 비교해 법적 지위가 애매하거나 그 하위에 놓임.

(3) TPA에 따라 미의회는 협상개시단계에서부터 협상전략을 비롯한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받고 또 ‘협의’ 할 권한이 있음. 협정문 공개논란따위는 있을 여지조차 없음. 반면 한국 국회는 헌법 60조 1항에 조약의 ‘체결에 대한 국회동의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련 정보를 사후에, 행정부가 원하는 것만, 그것도 수정없이, 오직 가부만 결정할 수 있음. 사실상 백지위임. 현재 국회비준동의 논란 역시 헌법60조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 가운데 후자 즉 비준에 대한 동의권으로 축소, 다시 말해 ‘절반의 권리’에 불과한 것임. 입법부가 적어도 통상에 관한한 대통령 권력을 전혀 견제하지 못함.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구성원리인 삼권분립의 기초가 대통령의 ‘통상독재’에 밀려 버림.

중 체류국에서 취득한 재화 및 서비스를 계상한다.

- ③ ‘통신서비스’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전화,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원격통신 서비스, 우편 및 배달서비스를 계상한다.
- ④ ‘보험서비스’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보험료, 보험금의 수취 및 지급을 계상하며 수출입 상품에 대한 적하보험, 재보험등을 포함한다.
- ⑤ ‘특허권등 사용료’에는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계상한다. 주로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다.
- ⑥ ‘사업서비스’에는 상품중개인 및 대리인의 상품 및 서비스거래, 승무원이 동반하지 않은 선박, 항공기 등 수송장비의 임대, 법률·회계·경영컨설팅, 광고 및 시장조사, 각종 공사의 기획 및 감독 등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를 계상한다.
- ⑦ ‘정부서비스’는 정부와 비거주자간의 서비스거래를 계상하며 해외의 대사관, 영사관, 군대 등이 주재하고 있는 경제권의 거주자와 행한 모든 거래를 포함한다.
- ⑧ ‘기타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융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 건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중 특히 금융서비스에는 수출신용장(L/C), 금융리스, 외국환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중개수수료와 유가증권거래관련 수수료를 계상하며,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는 소프트웨어의 구축, 하드웨어관련 자문,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유지·보수, 통신사의 뉴스서비스,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구독료를 포함한다.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에는 영화제작, TV 프로제작 등과 관련된 서비스료, 대중매체 배급권료, TV 중계권료 및 문화, 스포츠, 오락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계상하며 건설서비스에는 통상 1년 이내에 외국에서 수행되는 건설 및 설비공사를 계상한다.

(4) 한미FTA는 최소한 헌법을 포함 100개 이상의 현행법률의 개폐효과. 하지만 행정부가 조약체결을 통해 사실상의 법개정 효과를 기대하는 것과 이를 입법부인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한미FTA와 관련 행정부가 언제 국회와 법개정사항을 놓고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알 수 없음.

(5) 사실 한미FTA를 둘러싼 우리 사회내 갈등의 상당부분은 ‘제도 개혁’을 통해 얼마든지 회피 혹은 적어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었음. 따라서 ‘통상절차법’을 제대로 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0 자유무역인가, 보호무역인가는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주제가 아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말이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 나는 자유무역에 대한 대안으로 공정무역을 제안코자 한다. 한미FTA 타결과 관련해서 자유무역에 대한 거의 맹신적이고 무책임한 주장들이 횡행하고 있다. 심지어 이런 주장들은 농민들을 향해 ‘엄치없다’거나, ‘값싼 미국산 쇠고기 좀 실컷 먹어 보자’ 식의 대책없는 반농(反農)정서를 유포하기 조차 한다.

자유무역은 신상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경쟁효과가 있으면 경쟁역효과도 있기 마련이고, 개방효과가 있으면 개방역효과도 있기 마련이다. 지금과 같은 모양의 자유무역, 다시 말해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통상전쟁은 반드시 그 패자를 낳는다. 국가는 이들에게 자유무역의 떡고물을 떼어다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안겨다 줄 지 모르나, 이로 인한 사회양극화는 피할 길이 없다. 이러한 양극화는 비단 일국적인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이름의 자유무역이 보편화된 이래 세계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져만 간다.

공정무역 패러다임은 개방에 반대하지도, 무역에 반대하지도 않는다. 단지 불공정한 경쟁조건, 불공정한 교역조건을 재구조화를 통해 게임의 룰을 바꾸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소매형 공정무역이 있다. 이는 예컨대 컬럼비아 농촌을 위한다는 스타벅스커피샵에서 보는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진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벌여온 예컨대 제3세계 커피재배 농가에게 제값을 돌려주자는 캠페인을 말한다. 그 선의에 반대할 일은 없어나, 이 불평등한 세계를 개선하기에 조속지혈인 감이 있다. 둘째, 미 민주당식의 공정무역도 있다. 한미FTA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뒤바꾸라는 요구다. 왜냐 하면 미국차는 5천대 수출하는 데 한국차는 70만대 수출하지 않느냐는 식이다. 역지를 논리로 포장한 것이라 볼 만 하다. 셋째, 쿠바와 베네주엘라와 같은 ‘민중형’도 있다. 산유국인 베네주엘라가 석유를 공급해주고, 대신 쿠바의 우수한 안과기술과 같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자국민에게 무료공급하는 것이다.

지키고, 막고, 빼는 식의 보호무역은 이제 한계에 왔다.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자유무역 역시 지불해야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또 자유무역이 윈윈게임이라는 주장은 사실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통상패러다임의 재검토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부터 새로이 다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통상독재’로 귀결될 뿐이다.

■ 별첨자료

한미FTA 협상결과표

분과	쟁점	확인	한국측 입장	미국측 입장	쟁점 설명	한국안/미국안	협상 세부 결과	
상품	내국민대우원칙 예외	ok	예외인정 곤란	예외요구*	* 미측 국내법인 존스법과 상충되어 미의회 비준 불가능 입장	미국안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미 존스법은 예외	
	조정관세 적용	ok	현행유지*	배제요구	* 우리 관세제도와 상충	한국안		
	비역내산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금지	ok	관세환급 허용 요구	관세환급 금지 요구	* 수입원재료를 사용해 제조된 상품이 해외수출될 경우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미국안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	ok	폐지 요구	물품취급수수료는 다른 협상결과와 연계해서 긍정검토, 항만유지수수료는 협상대상 아님*	* 항만유지수수료의 경우, 미측 국내법인 존스법과 상충되어 미의회 비준 불가능 입장	미국안	*물품취급수수료만 면제, 사실상 미국안 관철	
농업	협정문관련쟁점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ok	필요?	반대		한국안(조건부)	* 도입기로 했으나 관세 철폐 이후에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발동못하게 되어있고, 발동 요건도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음.
		수입쿼터(TRQ) 관리 방식	ok	인정요구	수입쿼터에 대한 국영무역배제 및 수입부과금(마크업) 금지*	*현재 미국산 쌀은 농어촌유통공사가 수입(국영무역), 수입가 1만원에 마크업 약2만원부과해서 시중 판매	미국안	콩은 국영무역 포기, 민간수입허용, 감자, 보리는 일정량 TRQ허용/콩은 수입부과금 철폐
	양허안관련 쟁점	관세철폐 이행기간	ok	공산품에 비해 장기 이행 기간 요구	예외없는 즉시철폐		한국/미국안	1531개 품목 중 37.6%인 576개품목은 즉시철폐, 10-15년에 걸쳐 완전철폐
		기준세율(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적용)	ok	조정관세를 기준세율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	조정관세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	*실행세율보다 높은 수준	한국/미국안	품목에 따라 차이가 남으로 한국요구가 관철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음
		양허수준	ok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 철폐	*쌀은 양허예외	미국안	*쌀 이외 민감품목가운데

			예외적인 취급 필요				예외품목은 없음, 단 쌀가운데 HS Code로 '찐쌀'등은 개방, 쌀은 2014년이후 개방
섬유	관세철폐	ok	양국 모두 5년내 전 품목 관세철폐	중장기		한국/미국안	수입액 기준 미국 61%, 한국 72% 즉시철폐
	원산지기준	ok	역외산 원 부자재 소싱을 허용하는 단일실질변형기준(재단&봉제) 주장	원사기준(안 포워드)		미국안	* 1598개(HS기준) 품목 중 6개 완화
	섬유특별세이프가드	ok	도입반대	도입주장		미국안	
	수출국 정부 및 생산업체 의무 강화한 규정 도입	ok	전품목에 걸쳐 양국 동일 규정 도입	우회수출방지규정도입		미국안	한국업체 영업비밀을 포함한 경영정보 제공의무, 사전고지없는 현장조사 허용
원산지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	ok	공제법*	공제법과 집적법 선택사용	*집적법 채택시 모든 역내산 재료 원가공개, 영업비밀 침해우려	미국안	공제법과 집적법 선택적 사용
	자동차원산지 순원가법 도입	ok	반대*	순원가법 도입	*순원가법 도입시 추가비용우려	한국/미국안	순원가법, 공제법/집적법 선택적 사용 가능
	역내부가가치 기준가격	ok	공장도 가격 사용*	본선인도가격 사용	*본선인도가격시 미국의 내륙운송비용으로 생산비보다 높을 수 있음	미확인	
	개성공단	ok	역외가공 인정	실무사안 아님		미국안	*미측의 완강한 반대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환경/노동 기준 등 일정 요건'에 따른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
통관절차	원산지검증방식	ok	직접검증방식* 원칙으로 하나 간접검증방식 사용하도록 근거 도입**	직접검증방식 이외에 간접검증방식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직접검증방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확인 **간접검증방식은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입국 관세당국을 대신해 확인	미국안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원산지 현지실사제도 도입 합의
	원산지 증명방식		자율증명제 도입	자율증명제 도입, 수출자이외에 생산자와 수입자까지 증명권자 확대, 원산지 증명서 자율서식 도입		미국안	자율증명제도 도입, 수출업체,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발급 가능
	대미수출품에 대한 통관검사완화	ok	미 세관의 통관검사	미 법률 체계상 한국산 물품만 통관검사 면제		미확인	* 신속통관 관련 여전히

			생략, 긴급수출입물품에 대한 24시간 통관서비스 등 제공 요구	곤란			협의중(한노위, 열린우리당 위원회의원, 4/11)
	불복청구권 인정범위	ok	수출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도 불복청구권 부여	수입자이외에는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		미확인	
무역구제	반덤핑제도	ok	반덤핑 발동 요건강화 및 수준완화	협상 대상으로 하기를 거부*, 반덤핑 관련 법 개정 불가 입장	* 미 TPA이유	미국안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조사개시 전 사전 통지 및 협의하기로 함. 그러나 미국 반덤핑 관련 법 개정 불가 입장에 따라 핵심 요구사항인 제로잉 금지(전체 피해액의 86%), 비합산 조치 포기.
	WTO상 세이프가드 제도 상호 적용 배제*	ok	상호적용배제 입장	반대, WTO 협정상의 세이프가드 쟁 그대로 준용하자는 입장	*미측이 발동가능성 높음, 한국철강업계 요구, 나프타, 미-싱가폴FTA에서는 적용배제	미국안	* 한국상품이 미국에 주는 피해가 없을 때는 '재량적'배제
	양자간 세이프가드 제도	ok	허용	금지		미국안	
위생 및 검역(SPS)	협업체널 구성문제	ok	접촉창구(contack point)	SPS 위원회(committee)		미국안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ok	뺏조각 발견된 상자만 부분 반송	갈비 포함 전량 수입	노무현 대통령, 부시대통령에게 구두 약속	미국안(조건부)	*구두/5월 OIE 총회 이후 신속한 절차로 합리적 수준 개방 약속, 미업계와 의회의 계속된 압력으로 논란의 불씨 여전, 2003년 기준 미쇠고기수입액 8,000억중 LA갈비가 67%
	LMO 검역절차 간소화	ok	FTA 의제 아님	섬유시장 확대와 연계 6가지 요구		미국안	*6가지 요구 중 5가지 수용한 것으로 알려짐. 사실 관계 확인 안됨.
	육류 원산지 기준	ok	사육국 기준	도축국 기준	한국 WTO 협상에서 도축국 기준 지지	미국안	*미국에서 100일 이상 사육 후 도축한 경우 미국산 인정
	조류인플루엔자 지역화 조건	ok	FTA 의제 아니다	지역화 조건 인정 요구		미확인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기술규정 및 표준등의 제,개정과정의 투명성	ok	내국민에게 공개되는 과정에만 상대국 전문가 참여하는	제,개정과정에 미국민 참여보장		미국안	위원회 설치 합의

			수준					
	상호인정협정(MRA)	ok	의약품/의료기기분야에 관심	의약품/의료기기분야 MRA 부정적	한국/미국안	의약품/의료기기 제외. 통신 포함		
	협정의 적용범위	ok	지방정부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	중앙정부에 한정	한국안	지방정부의 WTO-Plus수준의 정보제공이 되도록 중앙정부는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민간기구의 적합성평가절차	ok	민간인증(예 UL)에 미국 정부 관여를 요구	민간부문에 정부개입은 제한	미국안	*민간인증시장 잠식우려 , 매출규모 연2조2천억		
자동차(작업반)	자동차세제 개편	ok	반대*	배기량기준 3가지 자동차세폐지(특소세, 자동차세, 공채)요구	*자동차관련세 완전폐지시 연4조 재정손실	미국안	한국 자동차세 5단계->3단계 특소세 3단계->2단계	
	표준(안전 및 환경기준)	ok	우리측 표준 관련 내외국 차별 없을 것이라는 입장, 표준제정시 협의, 자동차위원회설치에는 반대	표준문제 근본해결요구(상설 협의체 구성 등)		미국안	*미국산 자동차, 환경, 안전기준 예외허용(6500대 이하로 판매 제작사 미국기준 선택 가능하도록 허용), 배출가스기준은 '캘리포니아 평균배출량제도' 도입, 자동차작업반 설치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인식개선	ok	수입차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등의 반박, 설득	개선요구		미국안	구체적으로 밝혀진바 없음.	
	특별신속구제절차('스냅백'포함)	ok			8차 협상에서 신규로 제기	미국안	* 협정 위반 등 교역 장애 발생시 특혜관세(승용차) 이전으로 환원 가능. 협상최종단계에서 관철됨.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고', '전례가 없는' 강력한 제도라고 미국이 자평	
	관세	ok	승용차(2.5%)*, 부품(평균1.5%), 화물 트럭(픽업 및 일반트럭 25%) 등 관세 즉시철폐 요구**	15년 뒤 철폐		한국안	* 3000cc이하 즉시, 이상은 3년뒤 철폐, 3000cc이하는 대부분 미현지생산예정 **승용차, 부품 즉시 철폐, 픽업10년뒤 철폐, 비관세장벽(NTB), 특별신속구제절차와 교환	
의약품/의료기기(작업반)	약제비적정화방안	신약 A7 최저가 보장	ok	반대	신약 A7 최저가 보장	신약약가 대폭인상 여지, 추후 의약품위원회에서 다룸	한국안(조건부)	*단, 혁신적 신약 접근성 원칙 수용, A7변동률방식(선진7개국 약값하락시

							한국건강보험약값도 하향조정) 적용 여전히 유보
	독립적 의의신청기구	ok	민원기구로 한정	독립적인 기구	약제비적정화방안 무력화	미국안	
	의약품위원회 설치	ok	반대		모든 의약품/의료기기관련 정책 논의	미국안	
특허등 의약품독점권	신약등 품목허가시 제출된 자료독점권	ok	탄력적 대응*	유사품목까지 확대적용	개량신약 출시지연으로 약가인상 불가피	미국안	
	의약품 품목허가와 특허연계	ok	반대	모든 의약품 특허(물질, 제법, 용법 등)를 인정하여 다국적 제약사의 제네릭출시 거부권 부여	특허연장으로 인한 제네릭 출시지연으로 약가인상 불가피	미국안	
	신약허가신속화	ok	제도선진화차원에서 수용	신약허가기간단축으로 유효특허기간연장		미국안	
	3년이상 신약특허기간 지연시 보상	ok	제도선진화차원에서 수용	2-3년 기간연장시 허가기간연장		미국안	
	부실특허효과 등 기타	ok				미국안	
	전문의약품 대중광고허용	ok	반대	허용		미국안	제약회사 홈페이지 및 '링크페이지'
투자	MFN(최혜국대 우)	ok	제3국과 체결한 과거협약에는 적용, 미래체결협약에는 협의기회만 부여	과거, 미래 모든 협약에 부여, 단 항공, 해운,어업,통신은 배제		미국안	* 한국, 향후 체결하는 FTA에서 한미FTA보다 유리한 조건시 미국에 자동적용됨
	임시세이프가드	ok	반드시 필요	반대		한국안(조건부)	* 허용조건 관련 타결 선언 후 협의
	간접수용	ok	간접수용관련 부속서* 수용여부 추가검토	요구	*BIT 2004의 간접수용 부속서를 말함	미국안(조건부)	*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은 원칙적 예외, '세금부과'는 예외, 그러나 총칙의 '분쟁해결채터'에서 '조세조치'는 ISD대상임
	투자이행요건(P R)		실질적으로 합의	부과 금지를 요구		미국안	
	혜택의 부인*		바람직 하지 않음	요구**	* 일방당사국이 3국 국민이 소유통제하는 타방당사국의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을 부인 **9.11이후 정치적으로 민감	미국안	

	투자자국가소송 제 (ISD)	수용관련분쟁의 국제중재절차배제	ok	국내구제절차에만 제소	절대수용불가*	*국제중재절차 배제시 미의회통과가능성 전무	미국안	
		제소대상범위	ok	지나친 확대 우려	협정의무비롯, 투자계약, 투자인가 위반도 포함		미국안	
		국제중재절차의 구체적 내용	ok	유보	자료공개,심리과정공개, 제3자의견제출권리 부여		미국안	
국경간서비스무역	유보안 작성범위			주정부포함, 최종적으로 협상상황에 따라 신축대응	주정부조치에 포괄적 유보		미국안	* 한국, 지자체 비합치 조치 갯수 8개, 비합치조치 나열의무 면제; 미국, 주정부 비합치 조치 갯수 '셀수 없음', 비합치조치 포괄유보
	일시입국(전문직비자쿼터확보)		ok	반드시 포함*	의회소관사항, 협상권 없음	*캐나다 무제한, 멕시코 5,500, 싱가포르5,400, 호주 10,500, 칠레 1,400	미결정	*한국, 향후 미의회와 협의
	전문직 분야 상호인정			상호인정논의 위한 추진체계 규정 반드시 필요	민간협회가 담당, 연방정부 추진권한 없음		한국/미국안	전문직서비스 작업반' 설립, 우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사 분야 향후 논의하기로 함.
	특급배달(EDS),외국법률자문(FLC) 별도 부속서채택문제			유보안에서 처리	미 업계의 높은 관심에 비추어 협정문내에 별도 부속서 요구		미국안	
금융서비스	신금융서비스			상업적 주재, 국내법허용범위내 건별 허가를 전제로 수용	요구	자통법(국회계류중)으로 한국의 전제조건은 미입장에서 무의미	미국안	
	경영진 및 이사회 의 국적, 국내거주 요건			국내거주의무만 부여, 사실상 관련 유보사항없음	포함 요구		미국안	
	국경간 거래 ①보험상품 ②보험중개업 ③보험부수업 ④금융정보처리의해외위탁 ⑤자산운용업* ⑥신용평가업국경간 거래			한정개방	요구	*원화표시 자산운용의 해외위탁의 경우 미국 측이 우리 협상단의 구두확약(자통법 입법)을 받고 이를 쟁점에서 제외, 자통법에는 원화자산의 해외 위탁운용 금지조항 없음	미국안	①수출입적하,해상,항공,재보험 국경간 거래 허용(비대면 방식) ②국경간 거래 허용된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중개업 허용 ③보험부수업(자문,위험평가,손해사정,보험계리 등) 개방 - 자연인 이동 통한 공급허용 ④협정발효 2년후 허용 ⑤외화표시 자산운용의

						해외위탁 허용, 원화표시 자산운용의 해외위탁은 2년후 재협의* ⑥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거래는 불허하되 진출 허가조건 완화상업적 주재 시 모든 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 허용
	우체국보험, 4대 공제금융기관보험* 특혜폐지	특수성 인정요구	특혜폐지요구	*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공제	미국안	일부 특수성 인정, 우체국 보험 4천만원 한도내에서 서민고객 보험상품 판매, 금융감독(건전성감독) 강화; 4대공제금융기관은 3년유예후 협정 적용
	금융기관들의 후선업무* 국외본점 위탁허용		요구	*급여지급, 인사관리, 회계업무	미국안	
	금융 정부조달에 대한 내국민대우		요구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국채발행시장 참여, 국고취급기관 인정등 수용	미국안	
	국책금융기관 FTA적용	특수성 인정요구	민간기업과 동일기준, 세제, 법규적용 요구	* 국책금융기관 전체를 협정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인지 정책금융 기능에 국한하는지 불분명 *정부자체기능	미국안	산업,기업,주택금융공사,농협, 수협은 협정의 예외로 인정; 수출입,자산관리공사, 수출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예보공사,기보,신보는 정부자체기능으로 합의
통신	기술선택의 자율성	정당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개입필요*	정부개입 원천차단, 기술선택 자율성 원칙 보장	* WTO GATS나 미국이 기체결한 FTA(싱가폴, 호주, 모로코)에서도 허용	미국안	*공공목적한해 정부개입 인정, 그러나 그 대상을 주파수 효율적 활용 등 4가지 경우에 한정, 또한 표준채택후 사업자가 다른 '우수한' 기술표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응답하도록 한 조항은 미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정부 기술표준이 추가되어 기술표준 자체가 무력화될 소지가 있음.
	지배적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	상호접속, 전용회선등 의무에서 기간/별정간	모든 기간/별정사업자에게 차이 및 차별없이	* 시장점유율50%이상등 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시내통화KT,	한국/미국안	상호접속부분에서만 기간/별정 요율차이를 인정, 양측 이동통신분야에 지배적 사업자

				차이인정, 재판매의무는 수용곤란, 미이동통신사업자의무적용배제는 형평성에서 문제	의무부담해야, 미이동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제외한 의무 적용에서 배제	이동통신SKT **상호접속,재판매,망세분화,전용회선,설비공동활용 등의 의무		의무적용 모두 배제 단 상호접속의무는 우리측 우선분야만 적용
	해저케이블*		국내법틀내에서 보장	비차별적,합리적대우		*국내 육양(landing) 및 국내기간통신망 접속요구시 비차별, 미사업자가 KT의 시설 제공받을 수 있는지가 주된 관심	미국안(조건부)	*국내법(기간통신사업자허가시)에 따르기로 한 것이기에 조건부 개방으로 볼 수 있음.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 제한 해제		수용불가	요구			미국안(조건부)	*KT,SKT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협정 발효 2년 후 간접투자 100% 허용, 미기업의 M&A 대비를 위한 비용 증가 예상. 정부에서는 공익성 심사제도를 국가안보 및 공공성 관련 안전장치로 말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KT,SKT에 국한되며 국민기본권 관련 사항이 심사기준이 되고 있지 못함.
	희소자원의 분배 및 사용(주파수)		심사대가 할당제	경매제		행정유인가격(administrative incentive pricing),경매제 등 다양한 방법 이용 가능	한국/미국안	사업자 및 국민 부담 등 부작용이 많은 경매제 도입 가능성을 열어 둠.
전자상거래	디지털제품의 정의 및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정의에 디지털화되고 상업적 목적 또는 유통을 위해 생산되어야 한다는 표현 추가요구		미국안	* 서비스 전자상거래 유보대상은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기재, 시청각 서비스 제외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영구무관세		무관세로 하되, WTO의 결정에 따라 재검토	요구			미국안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		컨텐츠와 전달매체 합한 가격	전달매체만의 가격기준			미국안	이견시 상품위원회 협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권 보호기간*	ok	신중검토	50년에서 70년	* 미국의 핵심요구사항	미국안	
		일시적 저장*	ok	반대,	요구	* 미국의	미국안	

		기존보호조치만으로 충분		핵심요구사항(인터넷 이용 행위 자체에 권리행사 가능)			
	기술적 보호조치확대*	ok	과잉보호우려, 그러나 환경변화고려 대응	요구	* 미국의 핵심요구사항(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의 통제 가능)	미국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범위	ok	유형별 세분화 반대	유형별 세분화 요구		미국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침해자 개인정보 제공	ok	장단점 면밀검토	요구		미국안	
	정부의 정품저작물 사용 의무 부과	ok	대상 축소	요구		미국안	
	저작권인격권인정	ok	요구	반대		미국안	저작물 병행수입금지와의 교환
특허/자료독점권	자료독점권을 유사 의약품으로 확대*	ok	반대	요구	* 미국의 핵심요구사항	미국안	위 의약품 작업반 결과와 중복
	의약품 품목허가와 특허연계*	ok	반대	요구	* 미국의 핵심요구사항	미국안	위 의약품 작업반 결과와 중복
	특허청 심사지연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ok	신중검토	요구	* 미국의 핵심요구사항	미국안	위 의약품 작업반 결과와 중복
	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기간보상 차원의 특허기간연장	ok	국내 제도	요구		미국안	위 의약품 작업반 결과와 중복
	특허강제실시 발동요건 제한	ok	반대	요구		미국안 철회	미국 민주당의 입장 변경이 반영된 사항
	의약품 품목허가 목적의 특허사용(Bolar exception)	ok	국내 제도	요구		미국안	
	Grace period 1년으로 연장	ok		요구		미국안	
	특허권 취소 요건 축소	ok		요구		미국안	
	예외없는 특허출원공개*	ok	요구	중소영세기업보호위해 비공개제 유지	*잠수함 특허	미국안	
	특허심사청구제도	ok	요구	반대		미국안	
상표/도메인 이름	상표사용권의 등록요건 배제	ok	반대	요구		미국안	
	소리, 냄새 상표의 인정	ok		요구		미국안	
	UDRP에 따른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제도	ok		요구		미국안	

		법정손해배상액 제도도입	ok	신중검토	요구		미국안	
		비친고죄 적용분야 확대*	ok	관련 법안 법사위 계류중	요구	* 미국의 핵심요구사항	미국안	일부 자발적 법개정
		일방적 구제제도도입*	ok	반대	요구	* 미국의 핵심요구사항	미국안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경조치	ok		요구		미국안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금지 권한	ok		요구		미국안	
		형사처벌의 양형기준 도입	ok		요구		미국안	권장사항으로
정부조달		보증보험 발급기관 상호인정		상호인정	미 재무성 반대		미국안	
		BOT(Build-Operate-Transfer)*계약포함 여부		반대	요구	*민간사업자가 자신부담하에 공사시행후 수익향유	미국안	
		학교급식 예외조항		신설요구	입장유보		한국/미국안	* 미, 급식프로그램(Human Feeding Programm) 시행중
		중소기업 보호등을 위한 예외조항		신설요구	입장유보		한국/미국안	* 미, '중소기업할당'은 FTA예외, '미국산우선구매법' 적용대상임. 대부분FTA에서도 예외사항.
		미국 주정부 양허		요구	제외		미국안	
경쟁		경쟁법 집행 및 협력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합의, 동의명령제는 득실 면밀검토, 재별조항 불필요	경쟁법 및 경쟁당국 유지, 비차별적 경쟁법 집행, 관련 공정절차보장, 동의명령제도입, 재별에 경쟁법 적용 명시 요구		미국안	*동의명령제 도입, 재별관련 각주는 삭제
		독점, 공기업 관련 조항		수용곤란, 동 조항 도입시의 혜택 및 우려사항을 고려 유연성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	독점기업*, 아래 4가지 의무 모두, 공기업은 1),3)만 해당** 1)FTA 협정준수 2)상업적 고려*** 3)비차별적 대우 4)독점지위남용금지	*상품,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 또는 구매자로 지정된 기관(예, 전기, 가스, 수도, 철도등) **미, 이 조항은 NAFTA이래 경쟁채터의 필수요소임을 강조	미국안	***상업적 고려 의무와 관련, 정부지정 '독점' 기업의 경우 '지정조건'은 예외. '지정조건'은 향후 개정 가능
노동		무역,투자촉진 목적의 노동기준 저하금지의 범위		국제기준 비해 과보호 권리는 조정*	국내 노동법의 기보호수준 저하금지	*동조항은 <경제자유구역법>의 노동법적용예외사항과 충돌	미국안	

	공중의견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의 설치, 운영여부		관련 당사자와 협의후 수용	반드시 필요*	*미 의회비준의 전제조건	미국안	
	분쟁해결절차 설치, 운영여부		수용안됨	도입필요	*미의회비준의 전제조건	미국안	* 판정불이행시 1,500만 달러 과징금 부과
환경	환경법의 효율적집행의무		법적 의무 배제, 그러나 긍정검토	반드시 도입		미국안	*무역및 투자 장려목적으로 기 환경보호수준 저하 금지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도입		협의해결, 신중검토	도입필요		미국안	*FTA분쟁해결절차 회부
	절차적 보장		'사인'의 범위를 국내법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정	'사인(interested persons)'의 조사요구권 필요		미국안	
	환경법의 범위		주정부 포함	헌법에 위배, 연방법만 포함		미국안	
투명성/분쟁 해결/총칙	법령 재,개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ok	대안 모색	시행령 입법예고기간 20일에서 60일로 연장		한국/미국안	40일로
	패널판정 불이행시 금전적 보상 허용	ok	수용 추후 검토	요구		미국안	패널판정 불이행시 금전보상
	비위반제소	ok	확인안됨	요구		한국/미국안	비위반제소대상,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 지재권은 WTO결정때까지 유예
	국문본의 협정문 정보 인정	ok	절대 수용 불가	영문본 우선*	*TPA종료전 정식서명완료해야하는 시간적 제약으로 국문본 검증 불가능	한국안	

1. 협상결과 표는 2006년 8월 17일 외통부가 국회 통외통위에 제출한 보고자료(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미FTA 국회통외통위보고자료>)에 기초함. 이 자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자료로서 한국측의 원래 입장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이후 협상과정에서 쟁점이 추가, 변경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최종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음.

2. 협상결과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은 우석균, 지재권은 남희섭, SPS는 박상표, 금융은 김상조, 송종운, 이한진, 통신은 조형일 등이 정리한 결과를 거의 반영하였고, 양국 정부의 공식발표 및 언론 보도 등을 취합하였음.

3. 결과에 대한 판단기준은 1)한국안 2)미국안 3)한국/미국안 4) 조건부 5)미확인으로 구분하였음

1), 2)는 우선 요구한 측이 어딘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요구가 전적으로, 대부분 관철된 경우

3)은 양측의 요구가 대략 절반의 비중으로 절충된 경우

4)는 양측중 어느 한측의 요구가 주로 관철되었지만 조건이 붙은 경우(조건의 정도와 수준은 협정문의 면밀한 검토, 확인이 필요함)

5) 미확인은 현재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사안을 말함

4. 본 결과표는 협정문 공개후 변경될 수 있음

한미FTA 쟁점정리표

	협상 결과	협상 결과 2
미국안	85(79%)	89개 (82%)
미국안(조건부)	4(4%)	
한국/미국안	12(11%)	12 (11%)
한국안	4(4%)	7개 (7%)
한국안(조건부)	3(3%)	

미결정	1
미확인	4
미국안 철회	1

■ 발표 · 토론자 소개

사회자

박순성 코리아연구원 연구기획위원장/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sunsong@dongguk.edu

백준기 코리아컨센서스 운영위원장/ 한신대 국제평화인권대학원장 mishaa@chollian.net

발표자

곽준혁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jkwak@knu.ac.kr

박건영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think@catholic.ac.kr

안병진 경희사이버대학교 영미학과 교수 nsfsr@hotmail.com

이혜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2haeyoung@gmail.com

토론자

권혁용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hkwon@korea.ac.kr

서동만 상지대학교 교양과 교수 suhdm12@mail.sangji.ac.kr

유태환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thyoo@mokpo.ac.kr

이병천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lbch@kangwon.ac.kr

■공동 주최자 소개

코리아연구센터

코리아연구원(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연구기획위원장 박순성)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적 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하고, 자주·민주·평화에 입각한 통일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문연구자-정책담당자-사회운동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2005년에 설립된 싱크탱크입니다.

코리아연구원은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 및 대안 제시(현안 진단 79호, 특별기획 15호, 코리아포럼 6회, 국제컨퍼런스 1회 등) 그리고 중장기 국가전략 연구(『한국형 개방전략 : 한미FTA와 대안적 발전모델』-출판,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5월초 출간, 『북핵, 그리고 그 이후』-5월말 출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연구자-정책담당자-사회운동가의 정책소통과 대안모색을 위해 코리아포럼을 운영하며 진보개혁진영의 지적인 동반성장을 추구합니다. 코리아연구원의 모든 연구성과물은 홈페이지(www.knsi.org)에 공개되고 있으며, 향후 상근연구자를 보유한 싱크탱크로 도약을 준비합니다.

☎02_733_3348 / 홈페이지 <http://www.knsi.org>

코리아컨센서스

코리아컨센서스(Korea Consensus)는 2003년 설립된 '동북아전략연구소(소장: 이인영)'를 모태로 하여 대내적으로 사회적 협약을 통한 민주주의의 심화와, 대외적으로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통한 평화공동체의 실현을 목적으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2006년부터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 연구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탐구하던 '동북아전략연구소'가 한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진보적인 대안의 '컨센서스'의 도출을 통해 수립해 나가자 연구소의 명칭을 '코리아 컨센서스'로 변경하여 확대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컨센서스는 정책연구그룹을 지향하며 국제관계와 지역연구(미,일,중,러,중앙아,EU 등), 과학기술, 사회정책, 경제정책 등의 분야에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코리아컨센서스는 현재 백준기 한신대 교수(코리아컨센서스(준) 운영위원장)를 비롯하여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자 9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새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학문분야의 50여 명의 전문연구자들과 함께 법인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코리아 컨센서스의 구체적인 일정과 정규 프로그램 등은 6월초 개설될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02_3147_0633

■ 서면 질의서 ■

소속:

성명:

-질의 요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서를 배포합니다.작성 후, 진행요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